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서울성북구 동소문동 44번지 삼우빌딩 301호

전화 : 747-4354,5 팩스 : 747-4363

인권교육자료 199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인권교육자료

199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자료

1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역사적 발전상황 : Encyclopedia of Britannica, 「Industrialization & Modernization」, 「Human Rights」, 사회민주주의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인권』 —5

인권의 개념정립 : 위와 같은 책 —11

국제사회와 인권 : 위와 같은 책 —30

2부 인권은 국경을 넘어

우리들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제도 개요 : 『유엔세계인권대회소식』 1호 —39

국제인권장전이란 무엇인가?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45

인권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비정부조직회의 :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2호 —49

세계인권대회란 무엇인가 :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1호 —51

빈 세계인권회의 결산 : <한겨레신문> 1993. 6. 25자 —61

3부 한국의 인권상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요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69

4부 자료

세계인권선언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10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 위와 같은 책 —1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위와 같은 책 —124

사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 위와 같은 책 —145

국가보안법 —149

형사소송법 —151

형법 —177

199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자료」

차 례

1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역사적 발전상황 : Encyclopedia of Britannica, 「Industrialization & Modernization」, 「Human Rights」, 사회민주주의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인권』 —5

인권의 개념정립 : 위와 같은 책 —11

국제사회와 인권 : 위와 같은 책 —20

2부 인권은 국경을 넘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제도 개요 : 「유엔세계인권대회소식」 1호 —39

국제인권장전이란 무엇인가?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45

인권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정부조직선언 :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2호 —49

세계인권대회란 무엇인가 :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1호 —61

빈 세계인권회의 결산 : <한겨레신문> 1993. 6. 25.자 —65

3부 한국의 인권상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요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69

4부 자료

세계인권선언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10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 위와 같은 책 —1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 위와 같은 책 —12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 위와 같은 책 —145

국가보안법 —149

형사소송법 —151

행형법 —177

행형법 시행령 —179

1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역사적 발전상황
인권의 개념정립
국제사회와 인권

- Encyclopedia of Britannica, 「Industrialization & Modernization」, 「Human Rights」,
사회민주주의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인권』

인권의 역사적 발전상황

"인권(Human Rights)" 이라는 표현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 시점 부터 매일 같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권리(Natural Rights)"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자연법(Natural Law)"의 개념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가 되어 선호되지 않았고, 그후에 등장한 "The Rights of Man"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uman Rights"가 등장한 것이었다.

인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권개념의 역사적 근원을 고대 그리스 및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의 제노(Zeno)에 의해 시작된 철학으로서, 모든 생명체에는 보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도 자연법칙에 따라 판단되고 그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학파의 현대 이전의 자연법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 그리스 문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는 안티고네(Antigone)가 크레온(Creon)으로 부터 죽은 오빠를 파묻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질책을 받았을 때, 그녀는 신들이 허용한 불멸의 법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가 자연법의 등장과 확산에 중요한 역활을 했던 결과, 로마의 법률 또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법(jus gentium)의 원칙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법률가 울피안(Ulpian)은 자연법이란 국가가 아닌 자연(Nature)이 로마 시민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연법 이론이 자연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치이론과 가깝게 밀착된 것은 중세 이후에 들어와서 였다. 그리스·로마와 중세의 자연법 이론은 주로

"인간(Man)"의 권리와 구별되는 의무를 강조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저술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한 이론들은 노예제도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서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인간권리의 가장 중심적인 관념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인간의 권리 즉 자연법상의 권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필요와 현실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념 및 실천에 있어 약 13세기에서 부터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조약, 르네상스에서 부터 봉건제도의 붕괴에 이르는 기간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등장을 필요로 했다. 종교적인 억압과 정치.경제적인 예속상태에 대한 저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유와 평등, 특히 재산의 이용과 소유에 있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관념으로 전환시키게 됐을때 오늘날 이야기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기초가 진정으로 닦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 중 르네상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인적인 표현과 속세적인 경험에 대한 집착과 함께 지배자가 자연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의무로서의 자연법에서 권리로서의 자연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유럽대륙에 있어 토마스 아퀴나스(1224/5~1274)와 유고 그로티우스(1583~1645)의 주장, 그리고 영국에 있어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은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은 양보할 수 없는 불멸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것과 인류가 원시적인 상태에서 사회적인 상태로 들어가기로 "계약"했을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왕들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주장 때문에 축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점점 더 확산시켰다.

하지만 자연법의 이러한 현대적인 개념이 당연한 권리를 의미하거나 내포하고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은 주로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서 였다. 17세기의 과학 및 학문적 성과인 갈릴레오와 뉴톤의 발견, 토마스 홉스의 유물론,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이성론, 스피노자의 범신론, 베이콘과 존 로크의 경험론 등은 자연법과 보편적인 질서에 대한 신념을 고무했고,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완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커짐으로써 좀더 종합적으로 표현됐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자연법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의 저술과 몽테스큐(Montesqieu), 볼테르(Voltaire), 룻소

(Rousseau)와 같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18세기 철학자들의 책자들이다. 로크는 주로 1688년의 명예혁명과 관련된 책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1) 일정한 권리는 인류가 시민사회로 들어가기 이 전의 "자연상태"때 부터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로서의 개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는 것, 2) 그러한 권리 중에 중요한 것은 생존에 대한 권리, 전제적인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것 3) 인류가 "사회계약"에 따라 시민사회로 들어갔을 때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만 국가에 이양한 것이지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 4) 그리고 국가 자체는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면 국민은 혁명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고 했다. 로크와 기타 사람들을 근거로 한 철학, 모두가 이성에 대해 최고의 신념을 표시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상 조류를 받아 들인 철학자들은 종교 및 학문적인 교조주의, 일방적인 강요와 금지,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제한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권리(Rights of Man)" 이론을 비롯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따라서 인권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진리의 근본이 되었다.

이 모든 자유주의의 학문적 열기는 당연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기의 서양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688년의 영국 혁명과 그로 인한 권리장전의 실제적인 예와 함께 자유주의는 당시 주로 북미와 프랑스를 휩쓸고 있던 혁명봉기의 물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됐다. 로크와 몽케스큐를 탐독했던 로마스 제퍼슨, 미국 국민들은 "왕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라고 주장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1776년 7월 4일 13개 미국 식민지가 채택한 독립선언문에서 17세기의 평범한 어구에다가 시적인 아름다움을 더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느님으로 부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에의 추구라고 하는 일정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톤의 절친한 친구로서 미국 독립전쟁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 라파이에트(Marquis de Lafayette)는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영국 및 미국혁명의 선언문을 따랐다. 그 선언문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

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러한 권리들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으며,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 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것은 마치 1791년의 권리장전에 대한 추가 사항, 그리고 1787년의 미국헌법 내용을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진 인권에 대한 관념은 정치적 절대 군주주의에 대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기의 투쟁에 있어 중요한 역활을 했다. 이렇게 발전된 요인은 지배자가 사실상 시작에서 부터 자연법 이론의 중심이 되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대표적인 인권 연구가인 모리스 크랜스톤(Maurice Cranston)의 말과 같이, "절대 군주주의가 거부했기 때문에 인권 또는 자연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당연한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선 첫째로 자연법적인 권리 이론은 자주 종교적인 정설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철학적,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점점 더 받아 들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그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아니면 "영원한" 등의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점점 더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법적인 권리 이론이 우익과 좌익 양쪽으로 부터 강력한 철학적,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인 에드먼드 버어크(Edmund Burlke)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자유주의자인 제레미 벤담(Jermy Bentham)과 자연법적인 이론을 공격하는데는 일치했지만, 전자는 자연법적인 권리의 일반적인 확신이 사회적인 봉기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 후자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각종 선언문이나 발표문이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자연법의 신봉자면서도 "인간의 권리"는 자연법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거부한 버어크는 1790년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프랑스 인권선언의 초안자들을 비판하여, 인간에 대한 평등의 "괴상한 허구"를 선언하여 "힘겨운 인생의 암담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 잘못된 관념과 허황된 기대"를 불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

이면서 자연법을 믿지 않았던 벤담의 공격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그는 "권리란 법률의 산물"로서, 현실적인 법률에서 현실적인 권리가 나오는 것이지, 환상적인 법률인 "자연법"에서는 환상적인 권리만 나올 뿐이라고 썼다. 따라서 자연법적인 권리는 단순히 넌센스일 뿐, 미국의 표현과 같이 "당연하고 침범할 수 없는 권리"는 수사학적인 넌센스, 허황된 넌센스라는 것이었다. 흄도 벤담에 동의하여 자연법과 자연법적인 권리는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8세기 말에 시작된 자연법 그리고 자연법상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19세기와 20세기의 초에 격화되고 확대됐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궁극적으로 유효성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법률가 사비니(Friedrich Karl Savinig)와 영국의 헨리 메인 (Sir Henry Maine), 그리고 기타의 역사학파들은 권리란 특정 사회의 특수한 문화 및 주변 변수와 연관됨을 강조했다. 또한 법률가 존 오스틴(John Austin)과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토마스 홉스의 주장 처럼 "군주의 명령"만이 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모든 진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겸험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자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자연법 노선에 따라 옹호하려 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이론가는 거의 없어지게 됐다. 사실 19세기의 독일 이상주의, 그리고 그에 병행한 유럽 민족주의의 등장 상태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개인권리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란 어디에서 유래됐건 일차적으로는 공동체, 아니면 전체 사회 및 국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국의 이상주의자 브래들리는(F. H. Bradley)는 1894년에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 왜냐하면 공동체의 행복이 목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썼던 것이다.

하지만 자연법상의 권리에 대한 전성기가 짧았다고 해도 인간의 권리에 대한 관념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었다. 19세기의 개혁주의 산물인 노예제도의 폐지, 공장관계 법률 제정, 국민교육, 노동조합운동, 보통선거권을 위한 운동 등의 예는 인간권리에 대한 이념이 초경험주의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이었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좋은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관념, 인권개념이 진정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나

치독일의 부상과 몰락 이후였다. 유태인과 기타 소수민족의 재산몰수 및 학살을 합법화 시키는 법률, 경찰의 임의적인 수색과 체포를 허용하는 법률, 공개재판 없이 구속과 고문 그리고 처형을 묵과하는 법률 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법률들은 법과 도덕성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리주의나 이상주의, 아니면 기타의 결과론적인 원칙에 근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되찾게 했다. 일정한 행위는 무어라 해도 잘못된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적어도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법률가·철학가·윤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인권학자 루이스 헨킨(Louis Henkin)의 말과 같이, 20세기 후반기에 있어 청교도 혁명의 후계자, 그리고 명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러시아, 중국혁명의 후계자들은 "원칙상 근본적인 인간권리를 모두 수용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인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다." 사실 나중에 언급되는 것과 같은 국제적인 인도주의의 관심에 있어 근본적으로 예외에 속했던 19세기의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는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인권은 국제적인 인정과 함께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유엔을 창설하는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인종과 성, 언어와 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공동 및 개별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또한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의 대표들은 거기에 포함된 권리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에 대한 공통된 기준"임을 확인했고, 1966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협약"과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은 1976년을 기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인권의 개념 정립

국내 및 국제분야에서 인권의 원칙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인권의 정의에 대해 완전히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일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1) 인간의 권리는 신으로 부터 부여 받은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것인지의 여부, (2) 인간권리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직관인지, 관습인지, 사회계약 이론인지, 분배 정의의 원칙인지, 아니면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3) 인간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4)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넓혀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등,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계속 논의되는 사항들로서 공공질서와 자원부족의 해결방안에 대한 방법이 일치되지 않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인권의 성격

하지만 이러한 합의점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광범하게 수용되고 서로 연관되기도 하는 여러가지 입장은 인권을 정의하는데 있어 완전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섯가지가 두르러진 입장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인권은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이나 정당성에 관계없이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권력, 재산, 교육 그리고 기타의 소중한 가치를 결정하고 나누는데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요구,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그러한 모든 가

치의 추구에 있어 공동체의 구성 부분에 대한 존중의 가치, 상호 인정, 그리고 상호 자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 된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그러한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인간 및 제도에 반대하는 권리,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의미를 갖게 되어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변환경의 변화,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가치 내부 및 상호간의 피할 수 없는 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권은 가장 정당한 것에서 부터 가장 바람직한 것에 이르는 가치 주장의 광범한 범위를 의미하고있다. 인간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와 도덕적인 권리질서 모두를 의미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권은 인간 문제의 "현재상태(is)"와 "당위성(ought)" 양쪽 모두를 지칭한다.

세째로 어떤 권리가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성질을 자져야 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왕의 신성한 권리"및 기타 유사한 특권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권은 이론상 실제적인 가치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네째로 인권에 대한 주장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만큼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인권은 어떤 때 "전제가되는(prima facie)"권리의 의미를 갖게 되어 절대적인 용어로 생각하거나 이야기 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 다섯번째로서, 인권은 보통 약간 모호한 의미에서 "필수적이 아닌" 권리나 "자격"과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일부의 이론가들은 인간의 권리를 하나나 두개의 핵심적인 권리, 이를테면 생존에 관한 권리나 기회균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축소시키려 한다. 간단하게 말해 그러한 경향은 "단순한 기대"의 의미를 축소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입장은 몇개의 중요한 점에서 의문에 답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제기시키는 것이다. 권리가 "기본적인"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오직 어떤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좀 더 큰 것을 받아 들이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입장은 아무리 정확성을 기하려 해도 인권의 내용과 적절한 범위에 대해, 또한 여러개가 있을 경우 그 가운데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많은 것이다. 인권의 근원과 정당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인 인권에 대한 검토로서는 하나도 분명한 것이 없다.

인권의 내용

인간권리의 전통은 어떤 규범적인 전통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산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에 대해 내용과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시점에 있어, 또한 과거의 축적 문제에 있어 역사의 연속 및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내용과 적절한 범위,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우선순위 주장에 대한 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시작 이후 인권의 전통에 대해 영향을 끼친 주요 사상과 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법률가 카렐 바사크(Karel Vasak)가 제기한 "인간권리의 3단계론"이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의 세가지 구호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첫번째 단계는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제 2단계는 평등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 마지막 제 3단계는 새로이 우애(fraternite)라고 하는 단결 또는 연대(solidarity)에 대한 권리이다. 바사크의 유형은 지극히 복잡한 역사적 기록의 단순화된 표현인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서, 하나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낳게 하고 없어지는 문자 그대로의 생명체에 대한 표현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제 1단계〉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 1단계는 주로 앞에서 언급한 17세기 및 18세기의 개혁이론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과 연관된 것이다. 그것은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정치철학과 자유방임주의의 경제 및 사회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 인간의 권리는 무엇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 보다는 무엇으로 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정부의 개입 보다는 자제를 선호한다. 멘켄(H. L. Menken)이 말한 이른바 "모든 정부는 당연히 자유에 배치된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제 1단계에 속하는 권리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 2조 21항에 규정된 권리들로서 인종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로 부터의 자유,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 부터의 자유,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로 부터의 자유, 임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 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및 통신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직접 또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여기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는데, 미국 및 프랑스 혁명의 근본적인 관심사항 이었고,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기초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제 1단계의 권리들은 전적으로 "적극적인"권리에 반대되는 "소극적인"권리의 관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인간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에 대한 권리, 잔인한 형벌로 부터의 보호,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 등은 분명히 정부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이 없으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 1단계 권리의 개념에 공통적인 것은 자유(Liberty)의 의미로서,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대해 단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개인이든, 개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라는데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 오늘날 거의 160개에 달하는 국가의 헌법 대부분이 받아 들이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채택된 국제적인 선언 및 협약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이러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서양의 자유주의적인 인권개념

으로서, 어떤 때는 헤겔의 국가주의에 대해 홉스 및 로크의 개인주의의 승리라고 미화되기도 한다.

〈제 2단계〉

제 2단계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생시몽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후, 혁명투쟁과 사회복지 운동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사회주의의 전통에 주로 근원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노동계급과 식민지인들의 착취를 묵인하고 합법화시키기 까지 한 자본주의 발달의 폐해와 오류, 그리고 그것의 밑에 깔려있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의 개념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제 1단계의 권리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소극적 의미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간섭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 22조 27항에 열거된 것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과학, 문학, 예술작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그러나 제 1단계의 정치적 권리에 포함된 권리 모두가 "소극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2단계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포함된 모든 권리 또한 "적극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 2단계 권리들은 일정 기준의 분배정의에 따라 무형의 가치 보다는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제 2단계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국제관계의 결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의 국제화는 약

간 늦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 3세계의 국제 무대에로의 등장과 함께 "기대 상승에 대한 혁명"이 커짐으로써 현재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제 3단계〉

마지막으로 제 3단계의 단결 또는 연대(Solidarity)에 대한 권리는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단계의 가치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고 있고, 연관되어 있으며,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형성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20세기의 후반기에 있어 민족국가의 등장과 쇠퇴 양측의 산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세계 인권선언의 28조를 필두로, 현재까지 여섯가지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고, 이 선언문에서 규정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사회 및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의 세가지는 제 3세계의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한 권력, 재산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자결에 대한 권리,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구와 우주자원, 과학, 기술, 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 문화적인 전통, 유적, 기념물 등의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권리이다. 제 3단계 권리의 나머지 세가지, 평화에 대한 권리, 깨끗하고 균형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결정적인 점에서는 민족국가가 무력하고 비능률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가지의 권리 주장 모두는 집단적인 권리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모든 사회세력의 통합된 노력과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신성한 공동체의 이익 개념을 표출하는 유토피아의 가능성 추구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하나 하나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 및 국민들의 집단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질 및 비물질적인 인간의 필요에 대한 충족을 기초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부터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결에 대한 권리와 인도주의적인 원조에 대한 권리

도 법률적인 면모와 함께 도덕적인 면모를 띄고 있고 연대성에 대한 권리의 대부분은 성질상 정당성 보다는 기대성을 더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적인 인권규범으로서 불분명한 법률적 위치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부르조아"혁명, 20세기 초기의 사회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혁명,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직후에 시작된 반식민주의 혁명 이후에 해당되는 현대역사의 다양한 단계에서 인권의 내용을 광범하게 정의했지만, 그것은 제 1단계와 관련된 권리가 다음 단계의 등장과 함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거나 보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가치가, 어떤 시기에 가장 절실하게 추진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권의 내용에 대한 역사 또한 발전과 안정에 대한 인류의 반복적인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인권의 범위와 우선순위

이것은 세가지 단계의 권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모두 또는 일부가 똑같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 1단계의 주장자 들은 인권의 정의에서 제 2, 제 3단계의 권리 전부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은 "차후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나타나는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존재 보다는 배제를 강조하는 제 1단계의 권리에 따르는 좀더 큰 가능성의 시사는 어떻든 인권의 종합적인 개념규정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 결과, 희망적이면서 모호하게 주장되는 권리는 전혀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좀더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는 설명이다. 제 1단계의 권리 주창자들은, 특히 부자에 대한 평등주의 요구가 집단적으로 제기될 경우, 자유와 자격에 대한 극심한 제한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서(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사적으로 소유한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인권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와 무관한 것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견해에 기울어 진다.

이와 반대로 제 2, 제 3단계의 주창자들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제 1단계의 권리들은 자주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또한 불공정한 국내의 사회질서 그리고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사회질서를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따라서 "부르조아적인 환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본다. 그 결과 그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정립에서 제 1단계의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리의 위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실현되는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나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로 취급한다.

한마디로 말해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 특히 새로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은 서로 정통성과 우월성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그것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 및 사회체제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권리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 또한 그 중에서 주장되는 우선 순위에 있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

하지만 인권 주장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적인 주장은 결국 위험스러울 정도로 잘못 발전될 수가 있다.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 하여 자유와 개인주의 개념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합리화시키고 있고, 합리화시키는데 이용돼 왔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한 어떻게 평등과 집단주의 개념이 권위주의적인 지배에 대한 구실이 될 수 있고, 되어 왔는지를 조명하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현재의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경우 고려되어야만 하는 적어도 세가지의 근본적인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첫째, 범위와 우선순위의 일반적인 규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정치적 신뢰성과 배타적인 가치의 방어 가능성을 무너뜨리기가 쉽다.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영향을 주고 받은 세계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 모두를 가능한 한 광범하게 인정하고 나누어 갖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인권주장은 광범한 회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성격규정은 행동에 있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문화적인 전통 및 이데올로기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본적인 가치의 균형있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주장

이 늘어가고 있고 우세해 지고 있다.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 부터의 자유는 이 점에서 초기단계에 속한다. 좀더 최근의 표현은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싸이러스 밴스(Cyrus R. Vance)의 1977년 「법의 날」 연설로서, 그는 "인권향상을 우리 외교정책의 중심 부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정부의 결의를 표명하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정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식량,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일정한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집단주의 사회 또한 일정한 개인주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까지 한다. 현재의 우리 세계는 정도의 차이일 뿐, 이것 아니면 저것인 세계는 아니다.

마지막 세번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떤 국제 인권기구도 그들이 표명하는 권리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해 유효하다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한바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생명의 박탈로 부터의 자유, 고문이나 비인간적 또는 비열한 처우 및 처벌로 부터의 자유, 노예상태로 부터의 자유, 채무로 인해 수감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권리는 불가분한 것이고, 따라서 다른 어떤 것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법률가와 윤리학자, 그리고 정치학자들 사이에는 인권의 적용문제에 있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일정한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선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행복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차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념상의 가치는 적다. 유엔총회가 계속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간의 권리 모두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다양한 인권범위와 우선순위 주장은 전후관계의 문제이다.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 살고 있는 인간은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인권을 요구하고 받아들임으로서, 인권문제는 궁극적으로 시간과 장소, 배경 및 위험 수준, 그리고 기타의 주위 여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인권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고대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현대적인 국가제도의 등장, 새로운 세계의 발견, 그리고 뒤 이은 산업화와 유럽문화의 전 세계에로의 확산 이후 경제 및 기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와 관련된 독특한 관습과 협약이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관습과 협약들은 「외국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창시자들, 특히 프란시스코 비토리아(Francisco de Vittoria, 1486？~1546), 유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에머리치 바텔(Emmerich de Vattel, 1714~1767)은 일찌기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들 까지 포함하여 어떤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30년 전쟁을 종결하면서 독일에 있어 로마카톨릭과 신교도 간의 동등한 권리의 원칙을 확립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같은 소수의 기독교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이따금 이용한 것 이외에 다른 국가 국민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 였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이전 까지의 약 150년 동안 서로 연관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국제적인 수단에 의해 자국민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시도가 행해짐으로써 오늘날 「인권에 관한 국제법」으로 불려지는 것이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아는 이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이유에서 「외국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주의적인 간섭〉

전통적인 국제법 밑에서는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처리하는데 있어 배타적인 재량권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국가가 자국민, 특히 종교 또는 인종적인 소수 국민을 처우할 때는 너무나 강제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 인류의 양식에 충격을 가한 결과 억압받는 소수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위협을 가하거나 군대까지 사용할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간섭"의 대표적인 예는 1827년 당시 터어키의 지배 밑에 있던 그리스계 주민들의 고통을 중지시킨다는 명목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함께 오토만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행동에 합의한 것이었다. 그 결과 1830년에는 그리스가 독립하게 됐다.

이와 유사한 간섭은 1860년 시리아에서 기독교도에 대한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1866년에서 1868년까지는 크레테의 주민에 대한 박해를 구제하기 위해, 또한 19세기 말 터어키 지배하의 여러발칸 국가에 있어 기독교도에 대한 터어키 당국의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유럽 강대국들이 취한 행동이었다. 기타 인도주의적인 간섭에 속하는 것은 1890년대와 1900년대의 루마니아 거주 유태인들을 위해 여러 서방국가들이 항의한 사실이었고, 최근의 예로서는 소련의 유태인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의한 것이었다.

인도주의적인 간섭에 잇어서는 간섭의 정당성 여부와 간섭방법을 어떤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인도주의적인 간섭 개념을 뒷받침하는 원칙은 모두가 인정하는 국제법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유엔헌장이 효력을 발휘하여 국제적인 사건에 있어 일방적인 군대의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는 인도주의적인 간섭의 이용은 옛날 보다 더 어렵게 됐다.

〈국제적인 조약〉

종교적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조약을 사용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30년 전쟁을 종결하고, 독일에 있어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도 모두에 대해 동등한 권리원칙을 확립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카톨릭 국가들도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의 관할하에 있는 로마 카톨릭교도의 권리를 위해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774년 터어키는 러시아 지역의 이슬람 교도를 보호하는 조건 하에서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후 1815년의 비엔나 회의는 독일에 있어 기독교 각 분파간의 평등과 함께 스위스의 여러 지역(Canton)에 있어 종교의 자유와 각 종교의 평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 회의는 유태인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첫번째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합의했다. 1878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리고 루마니아가 터어키로 부터 독립할 때 터어키와 함께 모든 주민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그후 제일차 세계대전의 일부 평화조약, 이른바 소수민족에 관련된 특별조약, 그리고 각종의 선언문은 중부 및 동부유럽의 여러 국가, 그리고 중동의 이은 인종, 언어, 종교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일련의 의무조항을 받아 들이도록 강요함으로서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률 앞에 평등하고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고 했으며, 소수에 속하는 국민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기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와 시설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조약들에 의해 확립된 소수민족의 보호제도는 일반적이 되지 못했다. 독일은 패전국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레지아 지방의 주민에 대해 15년 동안 갖게 되는 의무 이외에는 (나중 1922년에 일부 지역을 독일로 편입) 소수민족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았다. 소수민족과 관련된 모든 조약들은 국내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의 의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연맹의 보장을 받는 조약이 되었다.

19세기 전반을 통해, 또한 1814년의 파리조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노예무역 금지는 국제적인 노력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여러가지 조약체결은 1815년과 1822년, 또 다시 1862년과 1885년, 그리고 1890년에 행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무역 금지 운동은 노예무역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26년의 국제연맹 회의는 모든 가맹국이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지는 한편 점진적으로 또한 가능한 가까운 장래에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는 「노예제도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과시키고 비준하도록 요청했다. 그후 각가지 형태의 노예제

도에 대한 투쟁은 유엔의 주도하에 계속되게 된다.

〈사회 및 노동문제〉

19세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많은 인도주의자, 사회개혁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국제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과 일부 국가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회의가 1890년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그 회의는 사실상 몇개의 모호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 이상 진전되지 못했지만 그것의 정신적 영향력은 컸다. 1905년과 1906년 또 다시 개인과 단체들의 주도로 정부대표들이 스위스의 베른에서 회의를 갖고 처음으로 두개의 노동관계 협약을 체결했다. 한가지 협약은 여성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냥의 제조에 있어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백린 또는 황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협약의 실제적인 범위는 당연히 좁을 수 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원칙은 현대문명의 발전에 이정표가 되는 상징이면서 도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전쟁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전쟁수행 방법과 전쟁 희생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다자간 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였다. 주로 두명의 스위스 시민에 의한 노력과 그들의 이상을 받아들인 하나의 스위스 단체, 나중에 지금의 국제적십자 위원회의 모체가 되는 단체에 힘입어 「전쟁부상자 상태의 개선을 위한 협약」이 1864년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그 조약은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하고, 포로가 된 부상자는 더 이상 군대에 복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868년의 센트 페테르부르그 선언은 전쟁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문명의 발전된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약 당사국들은 당시 시점에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그리고 전

쟁의 불가피성과 인도주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러한 전쟁의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시작은 1874년의 브류셀 회의와 1899년 및 1907년의 헤이그 회의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듬어졌다. 그 이상의 법률적 발전은 1, 2차 세계대전의 중간 시점인 1925년과 1929년에 계속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49년의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4번에 걸친 제네바 회담에서 검토되었다.

〈국제 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들이 독일 및 그 연합국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국제연맹의 창설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리에 모였을 때 전승국의 하나인 일본은 국제연맹의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종이나 국적을 근거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영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은 국제연맹 협약의 전문에 비슷한 내용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프랑스, 이태리, 중국과 같은 중요한 국가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 또한 채택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국제연맹의 설립 조약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취급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됐고, 또한 차별 철폐에 대해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그 협약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권리와 복지의 인정을 시사하는 일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었다.

1)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2)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공정한 처우의 보장 의무.
3)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항의 집행에 있어 국제연맹의 전반적인 감독 허용.
4) 전염병의 예방 및 감시와 같은 국제적인 관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

또한 국제연맹에 의해 독일과 터어키의 식민지를 위임 통치 하게된 전승국

의 의무는 원주민의 행복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신성한 문명의 위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조치는 약 반세기 후 유엔의 신탁통치 제도에 계승되어 서남아프리카(지금의 나미비아)영토에 대한 남아프리카 연방의 신탁통치에 반영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 종지부를 찍은이후 베르사이유 조약 및 기타의 평화 조약국들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제 13장을 모체로하여 국제노동기구(ILO)를 창설하게 되었다. ILO가 다른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점은 그 기구가 정부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고용자와 노동자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어떻든 ILO의 구조와 목적은 지금도 1919년 설립될 때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ILO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의 안전과 복지, 노동시간 그리고 유급휴가 등과 같은 노동관계 법규 및 노동조건에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엔의 특별기구가 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강제노동의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과 같은 인권보장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유엔(UN)과 인권문제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권에 대한 노력이 중요했다고 해도 국제무대에 있어 진정으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등장하게 된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잔학행위가 있고 난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전승국들은 독일의 중요한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국제군사법정」을 설치했고, 1945년에서 1946년에 걸친 뉴른베르그 재판에서 독일의 고위 관리들은 "평화에 대한 범죄"와 "전쟁 범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았다. 군사법정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법률이나 정부의 명령,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는 "인류 또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군사

법정의 구성과 절차문제는 나중에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 "인류에 대한 범죄"의 주장을 신중하게 적용했지만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처우도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든 것이었다.

〈유엔헌장〉

1945년의 유엔헌장은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커다란 국가와 조그만 국가 간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유엔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자결원칙을 기초로 국민들 간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 (또한)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 고무함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또한 두개의 중요한 조항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그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다." 하지만 인권의 보호와 더불어 증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유엔을 설립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분명히 거부됐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게다가 유엔헌장은 어느 조항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아니면 침약행위"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사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유엔이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헌장은 가장 전형적인 설립문서 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인권조항에 있어 눈에 띄게 개략적이면서 모호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유엔헌장의 인권조항은 설립 역사 및 "국내관할"조항과 뒤엉켜 적지 않은 법률 및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의 학자들은 국가는 유엔헌장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인권을 증진한다고 하는 모호한 의무 이상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한 유엔은 어떻게 됐든 가맹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호를 강요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엔헌장의 인권조항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한 의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가가 헌장의 당사자가 될 때 행하는 "서약"은 결국 윤리적인 의미 이상을 갖는 것이라

고, 또한 "국내관할"조항은 인권이 과거에는 국제 사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국내관할 내부"의 국가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유엔의 현실적인 실천면에서 볼 때 그렇게 대립되는 주장을 결론짓는 문제는 정부의 성명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인권문제에 있어 헌장의 성립 역사나 "국내관할" 조항, 아니면 헌장의 일반성과 모호성은 사실상 유엔으로 하여금 개인의 청원, 증인들의 증언, 국가적인 이의제기,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비정부 차원의 단체로 부터의 보고를 근거로 구체적인 인권사황을 조사, 토의, 평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또한 적어도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 경우, 유엔 가맹국의 대다수가 필요한 행동을 취할 의향을 갖고 있을 때는 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77년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남아프리카 연방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과 같음). 통상적으로 정부는 당연히 자신의 주권 또는 국내 관할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또한 인권의 향상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의 기구들도 전반적으로 유엔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의 대부분, 특히 초국가적인 권한의 부재와 분열된 권력정치의 존재로 인한 무력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거나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 의지가 있을 경우 유엔의 인권보호에 대한 법률적인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유엔 헌장상 인권향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총회에 있고, 총회의 관할 밑에 있는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그 하부기구로서 인권분야에 있어 유엔 정책의 중심적인 기구로 활동하는 정부간 기구인 인권위원회에 있다. 인권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은 위원회 소속의 활동집단에 의해 주도되는데, 조사, 평가, 권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차별 금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제기하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주장을 조사, 건의할 수 있는 활동집단을 매년 편성하고 있고, "심각한 침해" 주장은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1970년 1503호 결의사항에 의거 개인과 단체의 제보를 근거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활동집단의 조사를 근거로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한 대표단이나 사절단을 임명하여, 보고서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제공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검토하게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면담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다.

그 밖에 인권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여성의 지위에 대한 위원회와 같은 기타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인권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국제적인 인권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개 펴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76년의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같은 해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있다. 위의 세가지 문서를 합쳐 국제적인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 유엔헌장의 인권관계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인권 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은 각 국가의 헌법 및 법률체계에서 열거된 중요한 정치적인 권리와 시민적인 권리의 모두를 합친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법률 앞에서의 평등, 임의적인 체포로 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잇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의 권리, 휴식과 레저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과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도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의무 보다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를 위한 성과와 공통되는 기준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의 채택과 다음 두가지 협약의 서명 및 비준완료 간의 18년이라는 지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 보다는 법률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것은 일부 국가의 법정에 의해 유엔헌장이 규정한 인권에 대한 의무라고 판결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선택조항〉

1966년 12월 19일 부터 서명에 착수하여 1976년 3월 23일을 기해 효력을 발생한 이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이 표명한 권리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신의 영토내에 소속되고 관할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 피부 색깔,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신분, 또는 기타의 위치에 구별하지 않고, 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망명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된 일부의 권리들은 이 약정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포함되어있 지 않다. 그와 함께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가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국민의 자치에 대한 권리와 인종, 종교, 언어상의 소수민족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이 협약이 중복되는 경우, 이 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게다가 이 협약은 가맹국들이 설출하는 18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개인적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게 하고, 가맹국가가, 협약이 규정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채택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을 지게 했다.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을 명백하게 인정한 가맹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가맹국이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개입할 수가 있다. 만약 인권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 중재위원회에 회부시켜 사실을 조사, 보고케 하고,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케할 수 있다. 선택조항에 가입한 국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한 관련 권리의 대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협약 또한 관련 권리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정보호에 관련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 및 학문에 대한 권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과는 달리 이 협정은 일부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실현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아 가입 당사국은 "점진적으로 협정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의 가능한 역량"에 맡기고 있다. 이 협약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의미의 약속"으로서 기준 보다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즉시 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 시행해야 하는 한가지 의무는 인종, 피부 색깔, 성, 언어, 종교 또는 정치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및 사회적 출신, 그리고 신분이나 기타 위치를 근거로 하여 앞에서 열거한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약에 관련된 국제적인 감시조치는 가입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이 열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행사항을 유엔의 경제, 사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타 유엔의 인권협약〉

유엔의 주도로 제안되어 채택된 인권관련 조약은 앞에서 언급한 두개의 협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짧게 언급하려고 만 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광범한 범위에 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제목만 든다면 대량 학살의 금지와 처벌, 전쟁시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피난민에 대한 처우 규정, 무국적자에 대한 보호와 포용,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및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및 인종차별 범죄의 예방 및 처벌,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여성의 정치적 권리 향상과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형태 폐지, 그리고 이동노동자에 대한 기회균등과 처우 향상 등이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978년의 유엔 인권 보고서 참조.). 이러한 조약의 대부분은 특히 ILO와 같은 유엔의 전문기구

작품으로서 감시와 집행절차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65년 12월 21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한 것과 같다.

〈유엔의 인권관계 선언〉

조약을 통해 인권의 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세계인권선언"의 성과에 고무된 유엔은 인권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는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다. 총회의 결의 형태로 채택된 선언문은 실제 회원국에 대해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고 엄숙한 의미를 갖는 원칙을 선언할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영향에 대해 강력한 기대감을 조성할 수가 있게 된다. 아마도 「세계인권선언」이후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권사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1960년의 "식민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선언문"과 1970년의 "유엔헌장에 의거, 국가간의 선린관계 및 협력에 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문"일 것이다.

인권과 헬싱키회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3년 7월 3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되어 제네바에서 계속되다가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막을 내린 「유럽의 안전과 협력에 대한 회담」의 진행사항과 그 이후였다.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국, 그리고 13개의 비동맹 중립 유럽국가를 비롯한 35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그 회의는 지금까지 냉전의 계속으로 불가능 했던 동서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서로간에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 특히 소련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시점에서 확립된 서부 국경선을 인정받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서방제국들은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토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주장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결과, 인권문제와 해외이주의 자유 그리고 동서간의 정보교환에서 일정한 양보를 얻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회담에서 채택된 "마지막 조항", 「국가간 관계의 지도원칙에 대한 선언문」의 초반부에서 참가국들은 다른 "지도원칙"들과 함께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종하고, "국민들 간의 평등한 권리와 자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실천할 결의"를 엄숙하게 선언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권위주의 정권의 자유화가 시작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헬싱키의 마지막 조항」은 토의의 처음서 부터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문서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존중하고자 하는 결의"와 "실천한다"라는 용어는 오직 도덕적인 의무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됐고, 「원칙의 선언」은 국제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됐으며, 참가국들은 집행기구에 대해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권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는 「원칙의 선언」은 언제든지 최소한 국제법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게다가 보통 "바스켓(Basket)"으로 불려지는 4개 부분의 마지막 조항은 참가국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를 갖고, 그 "회의에서 시작된 여러 국가의 협의"를 계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조항"의 인권조항이 채택된 후, 그것이 외부적인 감시의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척도가 됐고 눈에 띄는 위반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헬싱키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유엔총회의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조약은 아니지만 적절한 인권보장에 대해 광법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인권 정책에 대한 감시를 쉽게 만들었다. 동서간의 부분적인 신뢰감을 생각할 때 헬싱키 회담은 적어도 인권분야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적인 발전

인권의 국제적인 향상과 보호를 위한 행동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인권헌장의 테두리 내에서 강제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이른 것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뿐이었다. 아랍의 「상설인권위원회」는 1968년 9월 아랍국가 협의회에 의해 창설되었지만 창설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지역내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의 권리문제에 정신을 빼앗긴 결과, 계획된「아랍인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인권의 보호보다는 추진하는 의미에서 기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인권체계〉

1950년 11월 4일 유럽협의회(Council of Europe)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의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53년 9월 3일을 기해 다섯가지 추가조항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 이 협약은 이 분야의 국제적인 실험으로서 가장 앞선 것이고 성공적이었다. 나중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비슷한 또 하나의 협정은 1961년의 「유럽의 사회 헌장」으로서, 그것이 규정하는 사항은 회원국이 「유럽협의회」의 각종 위원회와 기구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정교한 감독체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유럽협정에 의해 창설된 기구는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유럽협정은 또한 유럽의회의 정부차원 기구인 「유럽각료회의」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인권위원회는 다른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보고를 어떤 회원국으로 부터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인권위원회는 회원국으로 부터 법률적인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개인, 집단, 또는 비정부 단체로 부터의 청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국에게 "인권존중의 기초 위에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해야만 하는 의무를 진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인권위원회는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견표명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럽각료회의」에 사건의 「유럽 인권재판소」 회부를 비롯한 행동을 건의해야 한다.

인권재판소의 권한은 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국적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 그리고 제 3의 국가로서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하는 국가에 미친다. 하지만 인권재판소는 개인으로 부터의 소송은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도 피고국가가 인권재판소의 권한을 수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재판소의 관할을 수용하는 방법은 특수한 사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선언하거나, 아니면 재판소의 임의적인 관할을 수용한다는 일반적인 선언으로 가능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유럽의 인권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인권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회부될 수 없을 경우에는 유럽협의회의 각료회의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럽협약의 기구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협정의 대상문제에 대해 많는 분량의 판례를 남긴 결과, 일부 국가의 경우 협약조항을 국내의 헌법 또는 실정법의 일부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협약의 당사국은 다른 입법조치를 취해 국내법이 협약의 의무사항과 일치하도록 만들고 있다.

〈미주의 인권체계〉

1948년 제 9차 「범미주국가회의(Pan-American Conference)」는 「미주국가기구(OAS)」의 창설과 함께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선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비슷한 것이나 만 7개월 전에 발표된 것으로서,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와 함께 의무도 규정한 것이었다. (의무규정면에서 어쩌면 그리스, 로마와 중세의 자연법 이론에로의 후퇴인지도 모른다.) 그후 1959년 미주 외무장관 회의는 OAS의 기구로서 「미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미주대륙의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활동

을 담당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1969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개최된 「인권에 대한 미주국가 특별회의」는 "미주인권협약"을 채택하여 현재의 「미주인권위원회」를 협약 이행을 위한 기구로 만들었고, 산호세를 본부로 「미주인권재판소」를 설치했던 것이다.

1978년 부터 효력을 발생한 미주협약의 내용과 절차는 유엔과 유럽의 협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유럽의 「사회헌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주협약은 유엔 및 유럽협약과는 달리 개인, 집단, 그리고 비정부 단체에 의한 청원권을 무조건 인정하고 있다. 유엔협약에서는 관련된 국가가 선택조항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청원권을 인정하고, 유럽협약의 경우 관련된 국가의 특별선언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미주협약의 국가간 제소는 그러한 절차를 명백하게 동의한 국가들 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인권체계〉

저 멀리 1961년 부터 시작된 유엔의 인권위원회, 관련 국가, 그리고 비정부 및 기타 단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을 받아 들여 1981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18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인권과 국민적인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헌장은 비준 후 3개월 또는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할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83년 12월 31일을 기주으로 50개의 회원국 중에서 필요로 하는 26개국의 비준 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헌장은 유럽 및 미주협약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인권 및 국민적 권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과 보호기능 양쪽을 갖게 하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주장하는 위반의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국가, 개인, 집단, 그리고 비정부 단체 모두가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및 미주협약과는 반대로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또는 화해절차 없이 관련된 국가로 하여금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헌장은 인권재판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서양의 법률체계에 보편적인 적대적이고 강제적인 절차 대신 아프리카의

관습 및 전통은 중재와 화해, 그리고 합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프리카 헌장에 있어 기타 네가지의 특이한 면모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그것은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그것은 미주협약에 가까우나 유럽협약과는 차이가 난다. 둘째 그것은 유럽 및 미주협약과는 달리 가족, 여성, 자녀 이외에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병약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자결에 대한 권리가 생존, 평등 그리고 지배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되어 있다. 세째로 그것은 이례적으로 두가지의 "제 3단계" 또는 "단결"에 대한 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받아 들이고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에 대한 권리와 국가 및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권리는 물론 의무를 규정한 유일한 조약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 국가와 아프리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원과 국제적인 인권문제

국제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주장에 있어 새롭고, 아직도 더 가다듬어야 할 접근 방법이다. 다양한 문화환경에서 형성된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해석상의 문제 이외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 그리고 "입장"이나 "국가행위"아니면 "정치적 원칙의 문제" 등의 딱지가 붙은 여러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은 국내 상황에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한 고등법원이 고문의 세계적인 금지는 분명히 국제법으로 확립된 결과 미국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놀랄만한 판결에서 가장 극명하게 증명된 바와 같이 확실히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학자인 리차드 릴리치(Richard Lillich)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같이, "(국내) 법원이 국내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게 국제적인 인권 법률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높아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부 인권은 국경을 넘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제도 개요 : 「유엔세계인권대회소식」 1호

국제인권장전이란 무엇인가?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정부조직선언 :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2호

세계인권대회란 무엇인가 :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1호

빈 세계인권회의 결산 : <한겨레신문> 1993. 6. 25.자

자료 2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제도 개요

1. 유엔의 인권활동

국제인권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국제인권제도의 성립과 발전은 유엔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유엔은 헌장의 첫머리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남녀 및 대소각국의 같은 권리에 관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유엔은 성립이후 각종 인권조약의 발의와 채택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세계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국제인권제도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고 있다.

2.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

가.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1)유엔의 많은 기구 가운데 인권과 가장 깊이 관련된 것은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기구들이다.

(2)총회는 유엔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도록 원조하는 것"에 관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하도록 정한 헌장 제13조에 따라 그동안 인권문제와 관련된 각종의 결의와 선언, 조약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가 채택하는 결의와 권고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기준과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총회가 관심을 가져 온 문제들은 집단살해, 인종차별, 난민보호, 무국적자 보호, 여성의 권리, 노예제도, 결혼제도, 어린이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외국인의 권리, 정치망명, 불구자와 정신장애자의 권리, 고문금지, 발전과 사회진보의 문제등 거의 모든 인권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그밖에도 총회는 인권과 관련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식민지해방에 관한 특별위원회,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위원회, 나미비아에 관한 유엔이사회, 점령지구 인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조치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침의 권리행사에 관한 위원회 등이 있다.

(3)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62조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조장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기도 한다. 이사회는 헌장 제68조에 의하여 "경제 및 사회분야,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위원회)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설치하였다. 인권위원회는

다시 그 산하에 차별방지와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인권위원회는 유엔에서 모든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권고와 국제조약의 초안을 작성한다. 또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한 특별과제를 처리하는데 그중에는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통보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인권소위원회외에 특정한 주제나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설치하거나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를 임명하기도 한다. 특정한 나라의 인권문제로는 남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쿠바, 엘살바도르, 이란, 이라크, 과테말라, 미얀마, 자이레, 하이티, 적도기니아, 인도네시아 등의 인권침해를 다루어 왔다. 주제로는 인종차별(apartheid)문제, 계속되는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를 보이는 상황,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상과 촉진, 자의적인 처형(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종교적 불관용(religious intolerance), 대량의 난민과 용병(massive exodus and mercenaries)문제등이 있다.

(4)차별방지 및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위원회가 선출하는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부에 의하여 선출되지만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소위원회 역시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나. 유엔의 전문기관들

(1)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전형적인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하여 아동노동이나 빈곤층층의 문제,직업훈련과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조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넓은 뜻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강력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여러 인권침해구제절차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 ing Freedom of Association)는 국제노동기구의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노동기구의 본질적인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이다. 최근 국제노동기구 집행위원회는 이 특별절차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2)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UNESCO)

유네스코는 "정의 · 법의 지배 그리고 유엔헌장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문화를 통하여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는 구체적으로 교육의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 양심·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정보의 권리, 과학·문학·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이러한 권리들과 관련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및 침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건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방문한 이유로 처벌받은 문규현신부와 임수경을 위하여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이 제기한 사건(Communication No. 826/89)에서 유네스코는

한국정부에 '관용'(clemency)을 베풀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다. 유엔 사무국

유엔의 인권업무는 인권담당 사무부총장(Under-Secretary-General for Human Rights)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은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관련 업무에서 사무총장을 대표한다. 또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과 적용을 향상하며 사무총장의 인도적 업무(humanitarian good offices)를 보조하며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인권기구의 업무를 보조한다.

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난민고등판무관은 총회에 의하여 1951년 1월 1일 설치되었다. 고등판무관은 난민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향상하고 적용을 감독하며, 난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들과 협조하며 난민의 새로운 사회동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등 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3. 국제인권법

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1)유엔헌장 제1조 제3항은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고 촉진하는데 대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55조에서 유엔이 "한층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및 경제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과 "인종, 성, 언어 혹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는 모든 가맹국에 제5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과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이처럼 인권과 관련하여 추상적이고 간단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권을 국제화하여 인권문제가 더 이상 가맹국의 전속관할권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유엔에 인권개념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동안의 유엔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밝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 217 A(III)으로 채택.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두 30조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인권의 내용과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의 내용은 크게 보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부분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각국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이루어야 할 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이 선언은 국제법학자들에 의하여 유엔헌장이 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있는 문서이며 그중 중요한 부분은 세계의 모든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이 되거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후에 이루어진 유엔의 인권활동은 물론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자유와 존엄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되고 있다.

나. 인권조약

(1)그동안 유엔이 중심이 되어 채택해 온 인권조약들은 모두 70여개에 이르고 있고 그밖에도 수많은 선언과 권고, 결의 등이 있다. 그것들을 분류해 보면 가

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은 흔히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라고 부르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이다. B규약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더욱 강화한 제1차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사형폐지를 위한 제2차 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가 있다. 그외에 집단적 권리인 자결권에 관한 것, 인종. 성.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제반 차별금지에 관한 것, 집단살해를 비롯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금지하는 것,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것, 구속되거나 수감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것, 국적과 무국적. 난민과 망명에 관한 것, 정보의 자유에 관한 조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 고용정책에 관한 것, 여성의 정치적 권리, 결혼과 가족.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것, 사회복지. 진보와 발전에 관한 것,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것 등이 있다.

(2)인권조약이 채택된 경우 그것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보통 세 가지 제도가 거론된다. 첫째는 당사국에게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며 세째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사건을 통보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조약에 따라서 실시조치의 내용은 차이를 가지게 되며 첫째의 이행의무부과는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당사국이 꺼리기 쉽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3)감시기구를 설치하는 조약

상당수의 인권조약들은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구를 창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한 B규약,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를 만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한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를 창설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이 있다. 그밖에도 A규약의 경우에는 규약 자체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사회 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통 그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정부에 의하여 지명되어 4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일정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그 전문가들은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선출되지만 정부의 대표는 아니며 정부에서 독립하여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문명형태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기구는 조약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당사국은 그 조약을 비준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기에 자기 나라에서 그 조약이 정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이루어진 진보, 그리고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장애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구는 보통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논평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의하여 이미 두 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바 있고 B규약에 의하여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인권이사회가 심리한 바 있다. 인권이사회의 회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KNCC 인권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한국고문회생자 원호회(STIK) 등이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를 방청한 후 그 내용을 알리기도 하였다.

(4)개인의 통보를 허용하는 조약

인권조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실시조치에 속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라는 기존의 국제법이론을 중대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현대 국제인권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B규약의 제1차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B규약의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인권이사회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1977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14건을 접수하여 그중 138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치고 최종의견을 밝혔는데 그중 106건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당사국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대기업 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은 손종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인권이사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Communication No. 518/1992). 인권이사회는 사형폐지를 위한 제2차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통보도 심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고문방지위원회와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도 그 조약이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통보한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통보제도는 국내의 재판과 달라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보자와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우선 당사국 국내법에 의한 모든 구제조치를 다 거쳐야만 하는데 인권이사회가 내린 최종결정은 공개된다. 이 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당사국은 조약의 최종 해석기관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고 그 기관들이 내린 결정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갖기 때문에 피해구제와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5)유엔의 1503 절차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728F 및 1503호에 따라 진행하는 인권보호절차를 '1503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그동안 세계각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제도가 보호하는 인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한하지 아니하고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든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통지가 되고 나면 그후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인권소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형태"(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한다. 인권위원회는 정부당국의 답변을 들은 후 그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는데 일단 사건이 인권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나라의 이름이 연차보고서에 공개되어 정치. 외교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1년과 1982년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인권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심리에

회부된 일이 있다.

(6)그밖의 제도들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제도들 중에서 다음의 것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는 실종이 일어난 곳을 묻지 않고 관련된 정부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며 실종자의 정확한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사건을 유지한다.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밖의 제도로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 on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와 고문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가 있다. 이 기구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활동한다. 또 개별 국가의 상황을 연구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하며 실종이나 처형, 고문과 구금현상을 검토하여 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한다. 한편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과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impunity)은 침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뻔뻔스럽게 만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적 구제에 의존하게 하여 결국 법률에 대한 무시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위원회나 특별보고자들은 문제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직접조사하기도 하고 정부와 대화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행동"(urgent action) 절차에 따라서 사건에 개입하기도 한다. 또 유엔의 인권보호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증인, 법률가, 그리고 친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는 "신속한 개입"(prompt intervention)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정부와 접촉함으로써 관련자를 보호하고 있다.

4. 맺는 말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된 조약, 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Jerome J. Shestack)과 같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전세계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사람들과 국가권력에 대하여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지금도 계속 그 영역을 확대. 강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가가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특히 국제인권법은 그 본질상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더욱 큰 설득력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고 국내의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왜곡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권상황을 개선을 위하여 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번 세계인권대회는 이와 같은 국제인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인권대회를 통하여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정부도 국내의 인권상황과 제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인권을 향상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요망된다.

국제인권장전이란 무엇인가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도덕적 권위와 법적 구속력을 아울러 갖춘 국제인권장전(國際人權章典)의 제정이라는 거창한 작업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30년, 마침내 국제인권장전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 냈다. 197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그리고 B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것이다.

이 두 국제협약은 가맹국에 대해 광범한 인권을 인정,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함께 개인도 인권침해를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기본 목적을 밝힌 문서가 국제연합헌장인데, 오래 전에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한다는 귀절이 이 헌장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 기관인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장전과 관련된 결정 한 가지를 내렸다. 즉 앞으로 제정될 국제인권장전은 일반원칙을 밝힌 선언, 협약, 그리고 시행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선언은 도덕적 권위를, 협약은 가맹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인권위원회는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해냈다. 인권옹호의 기준을 설정한, 역사적 문헌이라고 부를만한 것이었다.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특수한 권리에 관한 협약 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과 법률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세계인권선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조약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문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다음 더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조약의 규정만이 가맹국에게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그러니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있는 여러 원칙을 조약의 규정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였다. 그런데 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두 개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다루고, 또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루기로 된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당장에라도 보장될 수 있지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점진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그 나라 유효 자원의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제연합 가맹국의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는 제각기 다르다. 그러니 어떤 권리를 규정하는 데 모든 나라의 동의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협약의 기초작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인권위원회의 초안은 다시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에 회부되었다. 1966년 12월 16일에 국제연합총회는 마침내 두개의 국제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수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 두 개의 국제협약은 각기 35개국 이상의 비준 또는 가맹을 받아야 했다. 또 다시 10년이 경과했다.

A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협약이 발효된 것은 1976년 1월 3일이다. 그리고 B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것은 같은 해 3월 23일이다. (선택의정서의 경우 최소한 10개국의 비준만 있으면 되었다. 그런데 발효일 전에 이미 10개국이 비준하고 있었다.)

그러면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B협약의 경우 국민이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는 법으로 보호할 책임을 진다. 누구에게나 생명, 자유, 안전,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노예제도는 금지된다.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함부로 체포·감금당하지 않는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소신과 발표의 자유, 평화적 집회를 가질 권리, 이민의권리, 결사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다음, A협약의 경우 국가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힘쓸 의무를 진다.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으며 알맞는 생활수준을 지탱할 권리,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국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체적으로 보아 협약의 여러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그대로 옮겨놓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면서도 두 협약에는 똑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규정 하나가 있다. 모든 인민이 자결하고 천연자원을 향유하며, 충분히 그리고 자유롭게 그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시행 조치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시행 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각기 다르다.

먼저 B협약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맹국은 선거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 인권위원회의 정원은 18명으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고결한 인격과 인권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하고, 또 자신의 일반적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와 해당국 앞으로 통보하는 권한을 가진다.

B협약의 선택조항에 의하면 인권위원회는 다른 가맹국의 의무 불이행을 나무라는 특정 국가의 통보를 검토하는 권한도 가진다. 이 때, 인권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그리고 관계국의 사전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특별위원회는 B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조정 업무를 벌인다.

1976년 3월에 발효된 선택의정서는 인권위원회에 또 하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정서를 비준(가맹)한 국가에 사는 어느 개인이 B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그 개인의 통보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다.(그러기 전에 당사자는 자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검토 내용을 관계국에 알린다. 인권위원회는 연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총회에 제출한다.

다음에는 A협약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긴다.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인 권고를(가맹국에 대해) 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서 가맹국을 돕기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국제적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인권에 대한 존경을 고취하는 것이다. 국제연합총회는 이 두 개의 국제협약과 선택의정서가 국제연합의 그와 같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믿고, 모든 국가에 대해 가맹을 권고한 바 있다.

쿨트 발트하임 사무총장(당시)는 이렇게 말했다.

"헌장에 명시된 국제연합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인종·성별·언어·종교에 기인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누구나 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국제인권협약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 수단을 국제연합과 가맹국에 마련해 주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비준 또는 가맹함으로써 인권존중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엄숙히 밝혔다. 본인은 그 밖의 나라도 이 대열에 참가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 선언

방콕, 1993. 3. 27.

개 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적 개발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110개의 비정부조직에서 파견된 약 240명의 참가자는 여성, 어린이, 원주민, 노동자,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대변하면서 1993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아·태 지역에서 현재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임은, 인권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정부간 모임(1993.3.29~4.2, 방콕)과 세계인권대회(1993.6. 비엔나) 및 그 이후의 활동을 앞두고, 국제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와 제안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다.

문제제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고려사항을 뽑아내었다.

1. 보편성

우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심화하는 데 이들 문화의 인간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아·태 지역 문화의 풍부함과 지혜로움을 포용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기준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성, 어린이, 소수자와 원주민, 노동자, 망명자와 피난민, 불구자, 노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인권에는 보편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적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2. 불가분성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는 인권의 내용이 시민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문화적이든지 상관없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관계를 맺는다. 인권의 향유는 공동체에 대한 다소간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날마다 일어난다. 이러한 침해에는 자결권의 박탈, 군사적 점령, 살해, 고문, 정치적 억압, 표현의 자유와 다른 자유의 억압이 포함된다. 한편 빈곤과 최소한의 필수품 결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종종 인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사회문화적 권리침해는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정치체계의 산물로 자주 일어난다.

경제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빈곤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잘 이루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요청된다. 한 종류의 인권이 다른 종류의 인권을 위해 거래될 수는 없다.

3.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관한 쟁점은 인권논의 중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인권제도와 관행에서, 계급, 카스트, 민족성을 통하여 관철되는 가부장제도는 여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부장제도는 일종의 노예제이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는 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특히 가족 안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존엄과 자결권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불가분적이고 평등한 경제적 권리—예컨대, 농토, 집과 다른 자원,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유엔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간, 성적 학대, 여성매매, 가정내폭력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만연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는 종교적이고 민족적 주체성을 군사적으로 점점 더 주장하는 것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는 이러한 침해가 종종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핑계로 이용하였다. 위기상황, 예컨대 인종폭력, 지역폭동, 무장충돌, 군사점령, 추방 등의 경우에 여성의 권리는 특히 침해된다.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제도를 만드는 데 동의한 경우, 많은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보조건을 둔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인종이나 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기원에 따른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연대는, 국가주권을 주장하거나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일국적 질서를 넘어선다.

5. 지속가능한 개발

어떠한 나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즉 외국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진정한 개발을 이룰 수 없다. 잘못된 개발(maldevelopment)이나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의 주요한 원인은 아 태 지역에서 제구주의가 지배한 결과이다. 진정한 개발의 전제조건은 이 지역에서 국가적 해방과 민족의 자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잡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개발의 극대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평등과 사회정의, 수입의 분배와 공정한 자원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시골사람들, 도시의 빈민들, 소수자, 토착민, 망명자, 피난민, 노동자 그리고 그외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집단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모델은 잘못된 개발을 초래하였다. 민족해방을 저지하려는 활동과 정치적 군사적 억압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결권이 개발의 구현과 관련한 주요한 양극점이다. 이러한 것은 지역적 특이성과 결합하여 있지만 사실상 국

경을 사이에 둔 사람들간의 공통성을 고려해 볼 때 국경은 때로는 자의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국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모형을 재건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구는 남녀 모두의 요구이며, 부채삭감, 국제적인 재정적·경제적·상업적 체제 개혁, 의사결정과정의 더 많은 민주화를 포함한다. 다면적이든 양면적이든 국제원조기구와 재정기구의 역할은 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과 행동에 의해 유발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강국이 인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세계적 평등과 부존자원의 면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개발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 시장의 권리(market rignts)는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달러 1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착취할 자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요망된다. 잘못된 개발은 가난과 수입불균등, 약탈, 수탈의 증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땅과 자원의 점령, 환경파괴가 그 귀결이고, 남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개발, 자유, 존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거시경제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모두 그 귀결이다.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여성의 권리부여 및 성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개발과정을 민주화할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개발과 인간적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다.

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률적이거나 형식적인 과정 이상의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일정당이나 복수정당 선거에서 의례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수준의 사람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 영향을 미칠 모든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적,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성과 신뢰성있는 절차와 제도 아래 모든 수준에서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훌륭한 통치, 타락의 추방, 국민에 대한 국가와 다른 당국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 즉 소수자와 권한이 박탈당한 집단의 참여와 보호를 포함한다. 그것은 시골사람들과 그외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위한 토지 및 사회정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작업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퍼져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조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7. 군사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군사화와 이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화는 시민사회의 파괴로 귀결되며, 자결권을 잠식하며, 사람의 자립할 권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때로 군사화는 자경단과 같이 민간인 집단의 외관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특히 원주민에게 해를 끼쳤으며 이주를 강요하였다. 그것은 성적 학대, 강간 그리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특히 상처를 주었다. 이들은 체포와 고문, 철수명령, 집단 살해, 실종, 기타 인권침해와 같은 쓰라린 사건들 때문에 신체적 건강,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사화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특정한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인종말살을 포함한 인종적 불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작고 다소 덜 군사적인 국가의 군사화는 초강대국이나 종교적 강대국에 의해 조장된다. 대량살해무기의 판매를 통하여 이득을 누리는 것이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잘못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탈군사화의 요청과 결합해 있다.

8. 자결권

민족의 자결권은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적 갈등의 깊은 기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자결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권리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따라서 자결권에 대한 민족의 권리는 모든 정부에 의해 수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적 결정이 반드시 국가상속이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결정은 독립, 자유로운 연합, 독립한 국가와의 결합 그리고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도달된 그외 합헌적 조정 등을 의미할 수 있다.

9. 고문

아태지역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의 존재는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피의자는 "자백"을 얻으려는 법집행요원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행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 값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취급되어, 몇몇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예방의 차원에서 그리고 치유의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치유라고 함은 고문희생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도 담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

이 자유는 많은 아시아 지역국가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민주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독립한 언론매체가 없다. 사람들은 공포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수감되며, 살해된다. 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핑계거리는 종종 국가안전, 법과 질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주의의 외피이며 민주주의적 열망을 억압하기 위한 외피이다.

11. 인권교육과 훈련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훈련은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내용에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문맹도 여전히 광범위하다.

학교의 교과목은 지배엘리트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격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훈련은 예방적 및 치유적 영향을 미친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막도록 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학교밖에서 정부 및 비정부계획 하에 종합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12. 원주민

아태지역은 많은 원주민의 본거지이다. 이러한 원주민에게 기본적인 쟁점은 많은 것이 정부에 의해 토착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주민들은 적절한 국제인권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들 특유의 문화적 주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부—남이나 북으로부터 혹은 동시에 혹은 국제적 금융기구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자행된 민족살해, 인종살해의 희생자이다. 현재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률제도는 집단적인 인권보호를 보장하기에는 취약하다.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여타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에는 토지의 몰수 및 약탈, 무장충돌, 피난민으로 추방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력에 의한 박해 및 억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때로는 관광업이 상업적인 착취를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기도 한다.

13. 어린이

어린이의 학대와 착취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것에는 어린이 노동, 노예 및 성적 학대, 어린이 매춘, 어린이의 판매 및 거래행위, 무력충돌 상황의 어린이, 수감된 어린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 또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어린이, 가족분열이나 해체와 더불어 가내에서 학대받는 어린이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영양공급, 교육, 보호장소, 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조차 종종 충족되지 않는다. AIDS의 출현은 어린이를 더욱 궁지로 밀어 넣었다.

어린이의 권리는 많은 상황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 초기에 어린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체제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가난, 영양부족, 질병, 교육의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들로부터 어린시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큰 흐름은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군사화, 왜곡된 개발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비록 많은 나라가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그 집행은 여전히 미미하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려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입에 발린 소리에 그치는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이 생존, 보호, 개발 그리고 참여에 대한 어린이 권리의 집행이,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고려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4. 노동자

아태지역의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만한 인권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역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상당수이다. 연대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몇몇 국가에서는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인권이 공장과 작업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성, 이주민, 노예노동자,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비조직된 부문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은 훨씬 더 열악하다.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특히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는 이 지역에서 자주 무시된다.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조직이나 기구는 때로 경제적 자유라는 명분아래 이러한 권리를 잠식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노동자의 권리침해 중 상당수의 것은 남쪽에 대해 인권을 외쳐대는 바로 그 북쪽 국가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15. 망명자와 피난민

망명자와 피난민문제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 무장충돌, 민족불화, 그리고 기타 요인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도 또한 생활근거지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들의 처지는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국제적 기구의 부족과 관계있다.

망명자와 피난민의 안전은 제한적인 정부정책과 차별정책으로 종종 위기를 맞는다.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도록 강요받지 않을 망명자의 기본적 권리는 자주 침해 되고 있다. 망명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립된 절차는 자주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복귀도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망명자와 피난민의 인권은 자주 제한적인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억압된다.

적절한 망명기구에 대해 동의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승인하고 상황을 국제적으로 선명히 하는 데 대한 외면을 뜻하는 것이다.

16. 퇴보

몇몇 나라는 인권퇴보를 통하여 인권의 향유를 제약하려고 한다. 때로는 민간정부의 외관을 갖기도 하지만, 군사화, 군사점령 및 통치가 확장되면, 인권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시민사회의 공간은 축소된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안전, 법, 질서 등을 이유로 인권기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총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17. 인권활동가/옹호자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활동가/옹호자—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와 이 지역내 사회운동에 대해 점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들은 자주 협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해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비정부조직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집단은 민중의 이익을 외치고, 그 진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롭게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권리와 인권의 모든 것을 향유할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8.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행정이 권위적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인권기준과 대립되는 다양한 국내법과 결합해 있으며, 특히 차별정책,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부 판사들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과 결합해 있다.

법률체제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재판체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주요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구조, 지원, 법적 지식의 유포와도 서로 얽혀 있다.

우리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민중이 재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요청한다.

쟁점(Issues)

참석자들은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다.

* 점증하는 정부당국의 불법;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활동;
* 남·녀의 존엄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
* 자결권에 대한 위협;
* 경제권을 포함하여 남자위주의 정치로 인한, 여성인권에 대한 무시와 끊임없는 침해 및 여성의 능력과 성평등을 향상 시키기위한 방법의 부당성;
*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압박, 범죄, 소비주의, 군사화로 인한 어린이 인권의 침해;
* 점증하는 환경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
*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무장충돌의 확산;
* 살인·실종·고문에 의한 정치적 억압, 정치범 그리고 자결권 ·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억압;
* 건강권의 침해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열악한 건강보호체계;
* 인권침해의 생존자들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부정;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
* 이민 노동자들의 비보호;
* 농촌사회에 대한 위협;
* 인도주의적 기능을 실천하는 건강이나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공격;
* 광범위한 성적 착취;
* 극단주의와 혼재된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의 다른 형태;
*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및 기타 구제의 결여;
* 인권을 침해한 자의 형사면책;
*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많은 강요;
*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돕는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원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족적 압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적당한 보호;
* 최하층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 증가하는 수많은 망명자 및 피난민과 그들에 대한 위협, 특히 피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결여로 인한 위협, 그들 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으려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
* 육체적·정신적 차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 노인의 복지와 지원의 결여;
* AIDS의 증가와 상대적 차별;
* 마약의 확산 및 그것과 관련된 이용;
* 낮은 교육수준, 특히 기본인권정보의 비효율성, 자각과 기술의 결여;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동의를 너무나 많이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 결여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규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국제인권체계에 대한 개인 및 NGO의 접근이 제한된 점;
* 독자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정부간 차원의 기구의 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활동에 대한 권고안

일반권고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대표들로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i) 다음 사항에 의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보호 증진할 것:
- NGO선언에 제의된 인권과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 개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소수자, 원주민, 비조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ii)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iii) 개발전략은 지속적이고 동등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개발전략은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iv)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제한하는 관행과 극단주의에 반대할 것. 특히 여성의 독립된 존재를 부인하는 법률, 정책, 종교 문화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운동, 대중교육, 장기간의 개발과 같은 수단을 취할 것;

v) 유엔세계인권대회전에 억압적 법률을 개혁하고, 임의적인 체포를 없애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모든 정부수준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훌륭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체계를 민주화함으로써, 국가안전과 법률, 명령에 의해 강요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

vi) 무장충돌의 근본원인인 외국의 지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토지의 박탈과 권리의 박탈 그리고 지배층의 외세와의 결탁을 제거할 것;

vii)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용을 개발과 인권의 증진·보호·예방, 기구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협의과정과 사회적 서비스, 평화

적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어린이, 소수 원주민, 조직·비조직 노동자, 피난민, 망명자, 농민, 기타 소외계층을 고려할 것;

viii) NGO를 포함한 인권활동가 내지 운동가의 활동과, 합법적 사회운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 나쁜 관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매개작용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

ix) 민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도움과 지원의 효용을 포함한 법적 수단 및 다른 장치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 그리고 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자의 형사면책에 반대할 것;

x)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예산을 인권개선과 보호로 돌림으로써, 또한 다른 재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이 국가예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할 것;

xi) 정보제공을 늘리고 자각과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훈련을 증진할 것. 참여학습방법이 그 지역의 문화적 부를 이용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기준의 증진과 보호에 공헌할 것이다.

특별권고

1.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i)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다음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1,2차 선택의정서;
- 고문금지 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CEDAW);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
-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
-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들;
- 소수자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ii) 유보조항,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조약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조약에 적용되는 유보조항을 철폐하고 모순되는 유보조항을 제거하고, 유보조항의 완전성을 재검토하는데 필요한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

iii) 고문금지조약에 관하여 제안된 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비준할 것.

iv)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내입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것.
-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평등과 차별폐지의 조항을 승낙할 것. 그리고 단체와 사람들의 관습법과 국가의 법들 사이의 모순들을 인권의 보편성, 즉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는 것.
- 여성, 어린이, 농민, 노동자, 모든 소외 계층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것.
- 종교적 조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

v) 조직적인 성폭력과, 고문,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 초법적인 강제처형과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

vi) 인권침해의 희생자, 특히 고문 희생자와 죄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vii) 정치범, 고문 희생자, 망명자, 피난민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것;

viii) 국가에 의해 시인 내지 지원된 조직적인 침해, 즉 고문, 성적노예(devadasi(신의 노예)체제의 희생자를 포함), 강제노동, 비자발적인 실종, 임의적 강제집행, 경찰과 군의 압박, 정치적 억압, 부당한 구금과 국내적 이주민의 희생자의 가족과 그 생존자에게 원상회복을 포함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완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

ix) 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발의도 환영하지만 그러한 수단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가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의 청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한 청원이나 탄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유엔기구에 동시에 탄원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정부내의 공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위원은 NGO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인권조항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정기적 보고체계 보고서의 초안작성에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군대, 국가 안전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 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
- 제소를 심리할 분리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정부는 지역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홍보하여야 한다.

x) 공개적인 합의에 따라, 특히 정부관리와 고용인, 법집행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특별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한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 모든 교육기관의 과목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권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가 인권교육과 훈련을 잘 실행하도록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xi) 인권조약과 기구에 관련된 자료를 아시아-태평양의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홍보할 것.

유엔에 의한 조치

국제기구

i) 우리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인권제도를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의 사안들이 유엔의 조약기구, 사안별, 국가별 보호자 및 실무위원회, 독립전문조사단 그리고 자신의 직무내에서 인권보호를 위임받은 모든 기구들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 등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ii)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환영하며, 이 초안이 총회에서 채택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인권대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일종으로 승인하며 성차별의 최악의 형태로서 공과 사를 불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앨, 보다 실효적인 집행절차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두어 태아의 성별 결정에 생물학적 조정을 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한 "성착취반대협약"의 초안을 도입함에 있어 여성 인신매매 반대연합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ii)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시의 인권상황의 악화를 사무총장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를 각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iv) 우리는 비상사태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악화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상사태에 관한 유엔 보고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v) 우리는 유엔세계인권회의가 현재의 선언을 구체화하는 "개발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채택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vi) 우리는 인권에 관한 현재의 정의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 강간의 범위, 강제이주와 전쟁범죄의 하나인 정주지파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적 희롱, 근친상간, 인신매매 및 매춘을 포함한 성적착취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vii) 우리는 유엔이 반인륜적인 범죄인 불가촉 천민에 대한 관습과 카스트제도, 종교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차별을 2000년안에 근절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발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viii) 우리는 유엔이 원주민의 탈식민화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실효성

우리는 유엔 기능의 팔목할 성장을 요망하며 인권개선 및 보호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아래와 같은 새로운 대응기구 및 조처의 수립을 요청한다.

i) 자결문제를 다룰 유엔특별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사무부총장의 관할하에 있게 될 것이다.

ii)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iii) 유엔기구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보장과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내에 개별적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할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방법의 대강을 정할 실무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iv) 아래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약감시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국가의 의무수행 및 미수행 정도에 관한 명확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
- 국가보고서의 제출, 특히 기일내 제출을 요구할 것
- 국가와 비정부단체간의 협의 및 (비정부조직의 동의하에) 국가보고서내 비정부조직의 보고서를 포함할 것을 장려할 것
- 공식적으로 비정부조직에게 정부보고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할 것
- 각 회의과정을 완전히 공개할 것

v) 현행 국가별·사안별 보고자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며 이들 기구의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다.
- 실행권고안에 대한 각 정부의 이행여부를 추적 조사할 체계적 방안을 마련한다.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 유엔 대표단, 보고자, 실무위원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vi) 인권에 관한 소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정치가나 외교관 같은) 정부직에서 선발하지 못하며 학계, 비정부조직, 언론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후보자는 출신국이 아닌 타국가로부터도 지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

vii)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관무관을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조화, 조정을 할 새로운 고위 정치기관으로 설치한다.

viii) 상설적 지위와 감시기능을 갖는 유엔원주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원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한다.

ix)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의제의 상설항목으로 포함시켜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향상시킨다. 또한 1503절차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서도 제기한다.

x) 상황이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유엔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제"를 통하여, 사무총장 외 특별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상황에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행동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기구를 개선한다.

xi)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 상설국제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xii)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이 법원은 개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법원에 전쟁범죄, 반평화죄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시의 성과 관련한 학대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배상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xiii) 강제적 매춘을 포함한 군대의 잔혹행위를 심판할 전쟁범죄법정을 아시아 지역내에 설치한다.

xiv) 원주민의 권리, 성차별 및 성폭력, 아동의 권리, 여성의 인신매매등의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자를 설치한다. 이 보고자는 정부와 비정부단체 및 정부간 기구로 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성폭력에 대한 보고자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또한 보고를 해야한다.

xv)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보고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국가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xvi) 유엔직원 및 독립된 전문가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훈련을 한다.

xvii) 성평등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인권에 관한 유엔의 모든 권고적 활동속에 통합한다.

xviii) 유엔예산의 최소 5%를 인권활동에 할당한다.

xix) 개회기간의 연장 및 지원단의 추가적 제공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고문희생자를 위한 유엔자발기금과 같은 유엔인권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시킨다.

xx) 유엔의 감시 및 조사보고활동, 이의제기절차와 그에 따른 권고활동, 여성.아동.원주민에 대한 권리침해제출과 관련한 훈련프로그램등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인권교육과 훈련

우리는 유엔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인권교육과 훈련을 위한 민중의 10년"을 선언하라.

ii) 인권교육과 훈련을 점검할 기구-가능한 한 관련 조약의 감시기구에 의한-를 제공하라.

iii) 비정부조직을 포함하여 각국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활동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하라.

iv) 각 유엔기구들로 하여금 1995년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여성인권에 쏟는 조치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지도하라.

v) 원주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의 공식의제가 되도록 하라.

민주화

우리는 유엔의 중요절차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민주화될 것을 권고한다.

i)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화 특히 거부권 및 상임이사국 자격의 폐지 및 총회로 추가적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군대에 의한 강제적 매춘과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ii) 여성, 아동, 원주민, 노동자 등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집단들의 관심사와 체험 그리고 투쟁들이 유엔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의 현재 진행중인 활동내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자문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지역회의 및 세계인권대회의 의제로 포함하며 회의에서의 발언을 위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 정부상호간의 인권문제를 다룰 구조적 방안이 없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아시아 및 그밖의 지역 모두에서 비정부단체가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발하여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우리는 매년 8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인권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임결정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경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iv) 유엔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인적·재정적 자원을 이용하게 하여 인권에 관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 조장, 지원한다.

특별기구

유엔제도 및 그 특별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엔과 남과 북의 각국 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 규제 및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에 의한 기구들의 정책이 유엔/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라.

ii)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비공식노동운동단체들을 보호하라. 그 방안으로 비조직화된 부문/비공식부문의 노동자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사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한 동기구의 정책사항을 강화하며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와 점령지구내 노동자의 축출 또는 강제이주관행에 대한 상황보고를 한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행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노동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라.

iv) 성과 관련한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유엔대표단, 직원 및 실무자들의 책임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절차를 보장하라.

군사화

우리는 각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의 생산, 판매, 전시 및 광고와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ii) 현존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아 태 방어 명목의 군사훈련 및 자국민과의 전투를 위한 서방 군사고문관 및 안전요원의 채용을 중지하라.

iii) 군사예산을 개발수요, 보다 나은 인권침해방지기구, 인권보호를 위한 자문절차, 사회적 급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재배분하라.

iv) 모든 준군사력을 해산하라.

v) 아·태 지역은 외국의 군기지를 유치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핵시설을 보유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vi) 군사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vii)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 긴급대응조치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는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협충돌 또는 민족간 충돌의 상황에서 성원전체가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보장할 것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영향 및 남성군사요원의 군사훈련 및 거동이 현지 여성에 대해 끼치는 효과를 보고 제출할 것

viii)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에 위반한 채 구금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석방하라.

ix) 모든 시민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라.■

자료 1.

세계인권대회란 무엇인가

1. 배 경

유엔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인종, 성, 혹은 종교나 신념으로 인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엔은 설립이후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이 주체가 된 각종 인권규약을 제안하고 조약으로 만들어 시행되도록 해왔다. 그 중요한 예로서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이런 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약, 고문방지 조약, 난민의 보호에 관한 조약 등 많은 것이 있다.

유엔의 인권활동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던 것은 1968년에 열린 테헤란 대회이다. 유엔이 주관한 인권회의로서는 처음으로 열린 테헤란대회는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는데 테헤란 선언과 29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유엔총회는 1990년 12월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인권대회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총회45/155)에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대회를 여는 것이 유엔과 각 회원국들이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해온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대회를 중시하면서 비정부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권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유엔 인권보호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거나 후퇴시키려는 흐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2 세계인권대회의 목적

유엔총회의 결의에서 밝힌 인권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인권선언이래 인권분야에서 이룩된 진보를 재검토하고 평가하여 그에 대한 장애를 밝혀내고 장래의 진보를 위하여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나. 모든 사람이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발전(개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다. 현재의 인권기준 및 인권제도의 새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라. 인권분야에서 유엔이 사용하는 방법과 기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마.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 촉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권분야의 유엔활동과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마련한다.

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상과 보호에 관한 유엔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그밖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인권대회와 연관행사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사실의 폭로보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제도와 인식의 증대에 촛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권보호제도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준비회의가 열렸다. 이 준비회의에는 유엔회원국들과 유엔전문위원들, 그리고 비정부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정부도 계속 참가해 오고 있다. 준비회의에서는 인권대회를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3. 세계인권대회의 참가자

인권대회에는 유엔의 모든 회우너국 정부는 물론, 회원국의 인권기구 대표, 유엔의 전문기구 및 국제기관등이 초청받으며 비정부단체(NGO)들도 참관자격으로 초청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가. 인권 또는 발전과 관련하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가진 단체

나. 인권 또는 발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면서 관련된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밖의 단체로서 지역국가들과 사전협의가 된 단체로서 세계인권대회의 준비회의나 각 지역별 회의에 참가한 단체, 이 때 지역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역국가들이 그 단체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폐쇄적이고 유엔에 늦게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인권단체들의 경우에는 위의 첫째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을 가진 국제단체들의 대표자격을 얻어 참가하거나 두번째 범주에 따라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4. 준비상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인권센터가 실무준비를 하고있고 지금까지 세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렸으며 각 지역별 회의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준비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가능한 한 비정부단체들의 참가를 봉쇄하고 인권의 보편성 대신에 지역 혹은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앞세워 인권에 대한 일국의 독자적 판단을 강조하는 국가들, 특히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들의 노력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시아지역회의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기로 겨우 조정되었다.

5. 비정부단체의 회의와 행사

가. NGO Forum

유엔 세계인권대회기간 중은 물론 아시아 지역회의 기간 또는 그 직전에 비정부단체들만의 회의(NGO Forum)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한 모든 비정부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비정부단체들 사이의 의견을 교환하고 인권대회에 대한 대응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제안문을 채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 병행행사

또 정부대표들의 공식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정부단체들은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토론회, 워크샵, 강연회, 인권자료 전시판매, 연극 노래 등 문화행사, 시가지 행진, 공동집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간단체들의 이 행사야말로 인권옹호의 최일성에서 활동해온 세계 여러나라의 단체들이 종합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로서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다. 대회의 성격(요약) :

이로부터 이번 세계인권대회는 1) 정부대표들과 유엔협의자격을 가진 단체들의 공식 세계회의 2) 비정부단체들의 별도 회의, 3) 비정부단체들의 다채로운 행사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명실공히 탈냉전시대를 상징하는 세계적 규모의 「인권대회」라고 할 수 있다.

6. 인권대회와 관련된 쟁점과 전망

유엔인권대회는 본래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권활동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 일부국가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는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극히 높은 실정이다.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인권대회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논리는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개념이 서구의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리, 둘째, 경제.사회적 권리 또는 발전의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권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수탈로 제3세계의 경제. 사회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선진제국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아예 인권문제는 전적으로 국내문제이므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간섭을 하는 것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은 기존의 인권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유엔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제안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경우 정부간 지역회의에서는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대회 자체 혹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중심을 두는 방향을 비판하고 인권단체들의 참여폭을 제한하려는 논리가 주류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에 의하여 여러 번 제안.촉구되었던 아시아지역 정부간 인권기구의 설치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편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아시아 지역 비정부단체들의 회의에서 주된 문제점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추측하기로는 일반적인 인권대회의 주제들 외에 극도의 저발전이 존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 주민들 및 선주민들의 권리문제, 아시아 지역의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문제, 아시아 일부 국가의 극심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대처하는 문제 들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유엔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인권단체들의 참가

가. 인권대회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새로운 인권관련 조약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 대회는 유엔과 가맹국들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구와 절차를 강화하여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국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대표들이 많은 발언을 할 것이고 약속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들은 우선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부대표가 그러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도록 만들며 그 약속의 이행을 감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이 대회는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인권제도와 활동을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국내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국제인권제도와 국제연대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

다. 구체적으로 이 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유엔의 인권기구와 제도의 내용 및 개편 논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흐름을 파악한다.

(2) 세계인권단체들의 활동방향을 이해하고 연대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협력체계를 만든다.

(3) 인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에서 인권문제와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달성해야 할 과제를 설정한다.

(4) 인권단체들 사이에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운동방식에 대한 모색과 실천을 한다.

(5) 인권단체들이 공동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고 국제활동의 경험을 얻는다.

빈 세계인권회의 결산

민간 인권조직 연대 길텄

실효성 한계…'보안법' 제기 성과

테헤란 1차 총회 이래 25년 만에 유엔이 소집한 빈 세계인권회의에는 이른바 '비정부조직'(NGO)으로 통칭되는 전세계의 3천여 인권운동 민간단체에서 대표를 파견하였다.

또한 이 회의는 6월24일 비공식 조직들에 회의기간중 유일한 본회의장 발언 기회를 허용해 한국 전태일 노동교실의 전순옥씨 등의 연설을 들었다.

이번 회의 역시 유엔이 주도한 과거의 모든 국제회의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의결권은 회원국 대표권을 가진 각국 정부만이 행사한다는 기본틀은 변함없었다.

제사면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성명채택권을 포함해 어떤 공식적인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현장의 민간조직들이 범세계적으로는 최초로 한곳에 모여 정부와 유엔, 정부와 정부 사이라는 유엔의 기본운영틀을 깨고 국제기구에 대해 그 "민주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접참여권"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데에 이번 회의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인권문제의 직접당사자들은 유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정권이익의 수호기관에 다름아닌 국가기관에는 제기할 수 없는 요구들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빈 6개항 요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비정부조직의 제안은 △유엔 인권담당 고등판무관 신설 △유엔 예산에서 인권관계 지분을 1%에서 5%로 상향조정 △상설 인권 특별법원 설치 △인권침해 조기경보체제 구축 △성폭력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망명근거로 인정할 것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이 요구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보편성 원칙"을 현재의 수준에서 구체화시킨 것일 뿐이다. 하지만 중국·시리아·인도네시아·이라크·이란·파키스탄·베트남 등 주로 이슬람 및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이런 인권 개념이 서구적 시야에서 일방적인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고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지역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서구 국가들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이 회의가 어디로 기본인권개념선을 그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구도로 인해 비정부조직들은 제목소리를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또 서구중심의 회의진행이란 장벽에 부닥쳐야 했다. 한국 공대위 대표단의 일원인 천정배 변호사의 확인에 따르면, 이 비정부조직들을 중개하고 대 유엔 창구 역할을 담당한 볼트만 인권연구소는 비서구권 인권조직들의 참여의식을 간과한 채 빈-제네바-뉴욕의 관련단체들만 가동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정부조직회의 기조연설자로 지명함으로써 남미 대표들의 반발을 사는 등 민간인권조직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한국의 공대위를 비롯한 개도국 대표들의 발의로 폐회까지 한시적이나마 대륙별로 대표를 선출해 연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도 했다.

이번 비공식조직회의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안법 문제를 총괄적으로 제기한 한국공대위의 활동방식이 전세계의 인권조직에 신선한 인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천 변호사는 비정부조직회의가 "실효성 있는 기구로 등장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조만간 국제인권법 같은 실정법을 발의할 연대적 토대는 확인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은 일단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를린/홍윤기 통신원*

3부 한국의 인권상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요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1.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2
2.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3.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6
5. 비상시의 기본권 제한 ---------- 7
6.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8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2
8.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 14
9. 사상과 양심의 자유 ---------- 17
10. 표현의 자유 ---------- 18
11.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 19
12. 참정권 ---------- 20
13. 생명권 ---------- 21
14. 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 ---------- 22
15.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 ---------- 25
16.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 29
17. 거주·이전의 자유 ---------- 31
18.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32
19. 여성에 대한 차별 ---------- 33
20. 결사의 자유 ---------- 34

반박보고서의 내용 (요약)

1.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로 인정받아 왔다. 우리 현대사는 불법적인 체포, 감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을 통한 투옥, 심지어는 실종 및 의문사로 얼룩져 있다. 1948년이후 9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과 법률들은 언제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권조항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부와 법원은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축소하여 해석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넓게 해석하여 많은 인권침해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반면에 정부는 민주화가 실현되었으며 인권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검토를 받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국제적인 토론과 비판을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내의 법과 법원의 판결, 정책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에서 규약의 조항과 관련된 한국의 법조문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규약에 정한 인권의 보장과 관련된 법체제를 완전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으며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원의 판례나 정부의 조치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보고서에는 실제의 인권보장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규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는 규약이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부의 보고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고의무는 단지 규약에 정한 의무와 관련된 법률과 규범들을 열거하는 것 뿐 아니라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과 판결들,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고 향유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관련된 사실들, 달성한 성과들과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요소와 장애들을 모두 포함한다."

라. 이와 같은 정부보고서는 인권이사회와 우리 정부사이에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며 규약의 목적과 이사회의 검토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독자적인 보고서를 이사회와 위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정부보고서의 결함을 보완하여 이사회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원래의 뜻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가. 우리나라에서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분단조건 하에서 반공 또는 반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일련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졌고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과 행동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정부와 북한정부의 관계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북한지역을 법률상 남한의 영토라고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남한정부에 대하여 "국토를 참절하고 국가를 변란하기 위하여 불법구성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다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연합의 공동회원국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북한을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북합의서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법원은 북한에 대한 과거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농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빈민으로 생활하면서 산업예비군으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노동운동을 공산주의적인 것 또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난해 왔다. 근로자들과

도시서민들의 권리주장과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찰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다. 또 다른 장애요인의 하나는 헌법의 권위와 규범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중 두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집권자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법원도, 일반 국민들도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는 군사쿠데타 등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1년의 군사쿠데타이후에 박정희장군이 구성한 "국가재건최고회의", 1971년 박정희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구성한 "비상국무회의", 198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장군이 구성한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많은 법률들을 만들어 공포했으며 지금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조금도 다름없이 정당한 법인 것처럼 정부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 그 법률의 수는 수백개에 달하며 인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들 및 국가권력의 조직과 행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이란 집권자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의 경우에 야당과 여론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에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의원들이 토론과 표결을 거치지 않고 날치기의 방법으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 법률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을 토론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대신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통과시키고 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많은 법률은 그 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규정등은 매우 막연하여 국민들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알 수 없게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주 드물게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기관의 공정성이 일반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정은, 한국에서 규약이 보장한 인권을 누리게 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의 하나이다.

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수사기관 또는 비밀경찰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이며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산주의자나 북한을 돕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람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때로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구속하고 고문을 자행하기도 한다. 반정부적인 지식인이나 활동가는 물론, 야당의 국회의원과 여당의 정치인들 조차도 이들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기부는 수사업무외에 정치에도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거에서는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관은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3.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가. 정부보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하여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규약이 일반적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국내법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는 규약보다 나중에 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규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규약의 효력발생과 내용이 국민들에게는 물론 정부와 법원 등 법집행기

관에 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법원은 실제로 인권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규약을 직접 적용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국가보안법사건들, 제3자 개입금지 사건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서 규약을 적용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이 규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판단한 일은 한번도 없다. 또 규약이 효력을 발생한 1990년 7월 이후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다. 결론적으로 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차원의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가.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제

검찰, 경찰, 안기부 등 모든 수사기관은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관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그리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 여부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가해져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사·소추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법상 사법적 통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재정신청절차이다. 1970년대 초까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3년 1월 당시 국회 대신에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던 비상국무회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정신청의 대상을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 극히 일부의 범죄로 제한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또하나의 통제수단은 헌법소원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제 활동을 시작한 1988년 9월 이후 1991년 12월 31일까지 검사의 불기소결정 9건을 취소했다. 그 후 검사가 당초의 결정을 바꾸어 기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사기관들은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며 인권옹호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며 (사례 : 수서사건, 노태우대통령의 불우이웃성금수수, 박종철고문치사·은폐사건), 범죄혐의자의 계급이나 정치적 태도에 따라 차별대우한다.

수사기관의 인권의식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다.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활

동을 통해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우며 그 개선책으로 특별검사제도가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나.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조)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헌법재판소는 상당수의 법들을 위헌으로 판정해 무효화하였고 많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활동은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을 권리구제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정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리구제는 가장 심하게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받아 온 핵심적인 반민주적 법률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명백하게 제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에 대해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막연한 구성요건에 또하나의 막연한 해석기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 1월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1년 7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5. 비상시의 기본권 제한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4조

가. 계 엄

역사상 비상계엄은 실제로는 군부가 쿠데타에 의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국민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었다. 이같이 계엄선포권이 남용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왔음에도 사법부는 그에 대해 아무런 구제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60년대 이래 1982년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법부에는 그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단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이같은 사법부의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이는 규약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수령과 전투경찰대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는 위수령은 상위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군 부대의 장이 병력을 출동하여 경비 및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이 출동한 군인이 민간인을 체포하고 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영은 헌법에 위배된 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비상사태를 빙자해 병력이 출동해 인권침해를 일으킬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개최하는 집회나 시위는 주로 전투경찰대에 의해 진압된다. 전투경찰대는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면서 그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1991년 4월 대학생 강경대가 시위도중 전투경찰대원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끝까지 추격해 온 전투경찰대원들에게 불잡혀 쇠몽둥이로 구타 당해 숨진 일도 있다.

위수령과 전투경찰대는 계엄의 선포에 의하지 않고도 군대 또는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는 전투경찰대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케 하는 규정 및 제도이다. 특히 전투경찰대는 상설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항구적인 계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수령과 전투경찰대 제도는 비상사태의 경우 기본권의 제한은 그 상황의 긴급성으로 말미암아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약 제4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제14조

가. 사법권 독립의 실상

사안의 성질상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 정도를 증거에 의해 계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독립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공정한 심판자로 행동하기 보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주장과 입증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것인지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많다. 공안검사가 내세운 공소사실은 거의 예외없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된다. 법원판결에 기재되는 범죄사실은 사실상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빈번히 부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하는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꺼린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공안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 죄형법정주의가 부인되는 것도 일상적이다.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대표적 형벌법규이다. 법원은 이 형벌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 공안사건을 처리하면서 막연한 규정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살리기는 커녕 도리어 공안검사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에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미리 구형량을 정해 놓는다. 공안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거의 예외없이 검사가 제시한 형량의 40-6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 사실은 법원이 형량의 결정에 있어 공안검사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으며 공소가 제기된 뒤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를 위한 노력이 부질 없음을 의미한다. 공안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거의 100% 발부한다. 공안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법부가 공안사건이 아닌 통상의 사건도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1%도 안되는데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검찰이 매우 공정하다는 것과 법원이 검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등 2가지 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진실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자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국민과 법조인 사이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있다.

나.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

6공 이후에도 사법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발전의 수준과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 요인을 단지 사법부 자체의 구성과 운용을 규율하는 단편적인 법과 제도의 미비에 있다고 보이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현재의 사법부가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과거에 독재세력과 협력했던 법관들이 1988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고위직 또는 중견 법관으로 과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사법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 중의 다른 하나는 그 인사제도의 결함이다. 법관의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고 관료적인 법관의 승진 이동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검찰의 영향이다. 검사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판결·결정을 내리지 않는 법관에 대해 간혹 그들이 가진 수사권을 이용해 위협을 가한다.

다. 재판의 공개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공개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증인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변론과 증거조사가 법정 밖에서 서면으로 행해지고 있어 법정에서 방청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소송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행이 생긴데에는 법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라. 무죄추정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을 사실상 유죄로 추정하는 법률과 관행이 존재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대부분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수감된 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그들만이 입게 돼 있는 품위 없는 제복을 입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80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게 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강도죄,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한 죄등 "특정강력범죄"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실제상 "특정강력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그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갑과 포승으로 때로는 가죽으로까지 온몸을 묶인 채 교도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재판을 받는 일이 많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검사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석방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31조 단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 전부터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기 쉽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기 수일 전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법원은 그 서류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결정되기도 전에 그것들을 검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질 수 있다.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의심의 이익(benefit of doubt)을 누린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중 약 99 %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

는다는 사실이 이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의자는 수사의 필요라는 구실 아래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기소된 경우 직위를 박탈 당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소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0년 11월 19일 이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90헌가48 결정).

마. 혐의사실의 고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그보다 앞서 그에게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상 경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방어권의 보장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변호사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변호인 선임을 바라는 피의자·피고인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얻어 방어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은 지극히 제한돼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구치소 등의 당국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접견자와 정치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족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제멋대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공판조서를 열람하는 것 이외에 소송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채 심판을 받는 수가 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측은 검사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검토할 수 없다. 구속기간의 제한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아래에서 뒤늦게 검사 측 증거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피고인 측은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신문은 대부분 유도신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은 주로 서류에 의존해 이루어짐으로써 진실과 먼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크다.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거서류가 우월한 증거가치를 인정받게 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

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증거서류에 의해 유죄의 심증을 얻게 된 법관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꺼리는 수가 많다.

사. 피고인의 출석권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 등 "반국가행위자"가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원래의 법에 정해진 형벌에 덧붙여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증인신문권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변호인의 출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규약에 위반된다.

형사소송의 실제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소재가 재판 당시에 불명해지는 경우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신문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채 그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점 역시 인권규약의 정신에 어긋난다.

자. 자백의 강요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이 관행으로 돼 있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장기간 구속돼 외부의 감시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자백을 강요 받는 수가 많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 기타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고 방어를 포기해야겠다고 결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7. <u>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u>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9조 제2항, 제14조 제3항 (b), (d)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은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자체를 수사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접견을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그리고 접견의 비밀을 침해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되는 것은 대부분 "공안사건"으로 분류되는 정치범들의 경우이다. 그중에서도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에 침해되는 양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당하며 최소한 48시간 정도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차단된 채 억압적인 수사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된 기간은 법률상 구속기간의 제한을 정하는 데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되면 비로소 가족들에게 통지를 해 준다. 그리고 피의자가 영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변호인이 검찰청이나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청구를 해도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전기획부의 경우에는 거의 2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하실에 있는 조사실에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안기부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이나 구속통지서에는 구속장소를 안기부 근처에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기재해 놓는 것이 관례이다. 안기부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라서 민간인이 출입하거나 안기부측과 연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안기부에 직접 피의자의 접견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안기부근처의 주자파출소와 중부경찰서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랜 시간을 무조건 기다리게 된다. 주자파출소나 중부경찰서의 경찰관이 안기부로 연락을 하면 안기부는 보통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 피의자와 접견을 하게 해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끝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안기부의 접견거부에 대하여 접견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접견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때에도 안기부는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다. 공안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접견을 할 경우, 수사관들이나 교도관들이 그 주위에서 대화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기록해 왔으며 안기부의 경우에는 접견과정에서 계속 사진을 찍는 등 접견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어 왔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관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이후 약간의 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변호인의 접견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하던 그날 부천경찰서는 절도혐의로 구속된 정계택씨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였으며 그 다음날에야 접견을 허용하면서 수사관들이 참여하여 듣고 녹음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구치소나 교도소외에는 안기부, 경찰서, 기무사, 검찰청 등에 변호인의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은 불가

피하게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 접견의 비밀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마. 피의자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수사관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지, 대답을 할 경우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로서는 수사도중 그에게 가해지는 고문이나 가혹행위,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처우 등에 대하여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 반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잘 읽어보는 것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종종 법정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후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에 적혀 있는 무인이 그의 것인 한 법원에 의하여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피의자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바. 1992년 3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일부 군부대가 장병들의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의 득표를 위하여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사실을 육군 중위 이지문이 폭로하였고 그는 군무이탈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중위의 변호인들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육군 제9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재판에서 군사법원 측은 방청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부 변호인들을 헌병을 동원하여 강제로 법정밖으로 끌어내기도 하였다.

8.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가.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권을 제한하고 있고 너무나 강력하게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남한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비중을 가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이 법의 위하력은 대단히 크다.

국가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미국과 소련의 지지를 받는 두 정부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수립된 직후였다. 이 무렵 남쪽에서는 일련의 폭동이 일어나 새로 수립된 정부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내란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국가보안법은 내란상태가 끝나고 한국전쟁도 종결되어 평화가 회복된 다음 점차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1년 5월 정부·여당은 날치기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 법률을 그대로 계속 적용하고 개정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만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는 지금 두 개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 부칙은 규약 제15조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나.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주요범죄의 유형과 사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조항은, '이적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제19조의 표현의 자유, 제22조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중 약 50개의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과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6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법원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너무나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 조항이 규약 제19조가 정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3) 잠입·탈출죄는 법원에 의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은밀히 왕래하는 행위 뿐 아니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왕래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잠입"과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남한과 북한사이의 단순한 이동을 처벌하는 이 조항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 규약 제12조 제2항, "자국에 들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규약 제12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찬양, 고무 ,동조,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 제작죄 조항은 국가보안법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조항으로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예술 등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단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는데 그 내용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허다하다.

이 조항에 의하여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포함한 저작들, 레닌의 저작과 그밖에 트로츠키와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루카치, 그람시, 모리스 돕, 레오 휴버만, E.H. 카, 프란츠 파농, 파울로 프레이리, 사미르 아민, 마르쿠제, 루이제 린저, 부루스 커밍스 등 오늘날 서구에서 사회과학의 고전적 저작으로 인정되는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읽었다는 이유로 지식인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소련이나 서구, 중국의 노동운동과 공산주의의 역사, 북한의 사정이나 역사,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관한 책들, 혹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학작품들을 출판하고 읽거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아 왔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금서로 되어 있는 도서는 1990년말 현재 376종이며 그후에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 판매한 서점의 주인과 그것을 구해서 읽거나 보관한 사람은 모두 처벌된다. 그외에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거나 미군이 남한에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 반대하여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하는 것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에서는 국립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학위논문으로 심사받고 통과된 학술논문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어 충격을 주었다.

(5) 회합, 통신죄 조항에서도 법원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북한외에도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단체와 개인들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때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는 일은 없다.

북한은 물론 국내외의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과 만나고 통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이 조항에 의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보장한 규약 제19조 제2항은 한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6) 불고지죄 조항은 규약 제18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 즉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다. 구속기간의 연장

1992년 4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고 구속기간은 30일에 그쳐야 하지만 그밖의 조항이 적용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7조와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은 종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라고 하여도 일반 형사사선에 비하여 20일이나 더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규약 제26조가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다고 보이며 그 기간은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규약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g)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현실과 괴리된 국가보안법 (이중기준의 적용)

최근에 통일교주 문선명씨는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기나 사후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행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입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문익환 목사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비교해 보면 정부는 이중기준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또 국제연합 헌장과 최근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정신 및 내용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거나 통일을 향한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대내적으로 국민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된다. 정부는 몇년전부터 북한 및 공산권에 관한 자료를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서울 시내 등 전국 곳곳에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에 가면 북한은 물론 공산권 국가에서 출판된 각종 책, 신문, 잡지 등을 원본 그대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만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들을 시중의 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으면 범죄로 처벌되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텔레비젼은 "남북의 창" 또는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북한의 사정을 소개하고 북한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의 북한영화나 텔레비젼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계 (별첨 '반바보고서' 참조)

9.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8조

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규약 제18조 제3항이

인정한 사유를 아주 넓게 해석하는 법률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중인 사람들의 경우에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향제도"는 명백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보안관찰법은 모든 처벌을 다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행정처분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기를 결정하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규약 제12조, 제17조, 제18조 등에 위반하고 있다.

다.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고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의 경우에 그 자녀가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믿는 것과 다른 내용의 종교교육을 학교에서 받게 되므로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9조, 제25조 (b)

가. 국가보안법 (별항 참조)

나. 제3자 개입금지규정

이 조항들은 1980년 12월 31일 군사쿠데타로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것이다. 이 조항들은 근로자들을 도와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이용되었을 뿐이며 사용자의 편을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다. 이 조항들의 구성요건은 "조종, 선동, 방해,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 개입" 등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권을 침해

하는 데 남용되었다. 이 조항들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부당하게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여러 비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1월 15일 이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선언하여 이 조항들에 대한 더 이상의 문제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제3자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다. 영화, 공연, 음반 등에 관한 사전검열

헌법이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러 법률(공연법, 영화법, 음반법, 정기물등록제, 방송법)은 실제로 사전 허가나 검열제도를 정하여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규약 제19조에 위반된다.

라. 기밀보호법제의 문제점

마. 정부가 독점하는 교과서제도

바. 각종 선거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사. 알 권리 (정보공개)

11.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1조

가. 집회의 사실상 허가제도

집시법상의 금지통고 규정에 위반하여 집회를 연 경우에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된 집회 시위가 금지통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을 선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집회의 내용과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해당법규를 차별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금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예정장소 등을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진압과정의 무분별한 폭력행사

강경대와 김귀정의 사망사건에서 보이듯이 정부는 일단 불법이라고 규정한 집회, 시위에 대하여 무장한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진압을 하여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집압과정에서는 대량의 최루탄이 발사되는 것은 물론이고 쇠파이프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하며 시위대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한다. 또 권총이나 M16 소총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다.

12. 참정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5조

가. 노동조합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반면 법률에 의하여 기업과 사용자 및 그들의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또 정치자금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노동조합에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선거법은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등의 부재자투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나 여야당 참관인의 참관 등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규약 제25조에 위반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사실을 부인할 뿐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1960년 5월의 군사쿠데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칙 제2조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안에 하기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1월 10일 대통령은 위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1992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한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피선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라. 각 선거구간의 선거인 수 차이는 규약 제25조(b)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예: 지난 국회의원선거시 서울 구로갑 238,346명 -

전남 장흥 51,770명).

13. 생명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법률들은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형법에서는 모두 18개 조문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모두 45개 조문에서 사형을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모두 50개 이상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을 광범위하게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도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형을 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단 사형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6월이내에 형집행을 명령해야 하고 장관의 명령이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확정일부터 집행일까지의 유보기간을 두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마자 형을 집행하여 사형수가 사면이나 감형, 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라.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주된 계층의 사람들은 근로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열악한 근로조건아래에서 근로자들의 강도높은 노동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 다수의 근로자가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또하나의 분야는 선원들이다. 선원들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에 의하여 매우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밖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위생,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상급선원들의 폭행 또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중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안전사고 또는 자살로 처리되어 가족들의 항의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14. 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7조, 제9조

가. 우리나라의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이 고문 또는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직접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고문이 많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몽둥이나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그밖의 폭행과 위협, 잠안재우기, 오랜 시간동안 서 있게 하거나 발가벗긴 상태에서 신문하기, 모욕을 주기 등 여러 형태의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또는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는 사람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자백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많은 고문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검찰과 경찰, 안기부, 국군기무사, 마약관련 기관 등 거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정치범을 주로 체포, 신문하는 안기부이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의 호소가 잇따라도 안기부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할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연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장에 의한 구속과 신문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강제연행한 다음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그 자백을 근기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일단 구속이 되면 기소되기 전에 일반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30일까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50일까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쉽게 구속할 수 있는 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신문하는 기관과 그를 유치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없게 되고 수사기관은 구속기간 중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자기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손쉽게 가혹행위를 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마. 검사는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사실상 수사를 위하여 며칠씩 강제연행하여 불법구속하는 것은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관행이다. 더구나 고문 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안기부나 경찰청(과거의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은 구속장소가 없으면서도 장기간 피의자를 유치하여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소들은 검사의 유치장 감찰임무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구속기간 중 변호인은 물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일이 많이 있다. 이처럼 민간인 또는 공정한 제3자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쉽게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가혹행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 피의자가 고문이나 그밖의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폭로되어도 당국은 언제나 그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거의 드물다.

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또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의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에서 심하다.

자. 수사기간은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려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다음 48시간 혹은 그 이상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을 근거로 임의를 발부받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때에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모든 불법수사와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적절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안기부에 의하여 피의자가 연행되면 대개 안기부지하실에 갇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 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억압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연락, 접견하는 것이 금지